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4. 6. 19(목), 14:00 ~ 19: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박경립, 이강근, 이수곤, 이승우(혜일), 장석하, 정명섭, 천득염, 최성은, 홍승재 (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총 45건
 - 심의 37건 : 원안가결 14건, 조건부 가결 8건, 부결 9건, 보류 6건
 - 검토 5건 : 조건부 가결 3건, 부결 1건, 보류 1건
 - 보고 3건 : 원안접수 3건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의성 대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2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3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 진입로 석축설치 및 포장 등(2차)	공개
4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454-1)	공개
5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451-3)	공개
6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 운곡천 정비	공개
7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대웅전 신축(2차)	공개
8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요사채 신축(2차)	공개
9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0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주변 근생 및 주택 신축	공개
11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청허당 증축	공개
12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산신각 복원(2차)	공개
13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공개
14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2차)	공개
15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4차)	공개
16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2차)	공개
17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3차)	공개
18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주변 주민쉼터 조성	공개
19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화장실 이전 신축	공개
20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나무데크 포토존 설치	공개
21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태양광발전설비시설 설치	공개
22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 태양광발전설비시설 설치	공개
23	강릉향교 대성전 주변 향교관리사 개축	공개
24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	공개
25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공원관리사무소 신축	공개
26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산신각 및 요사채 신축	공개

27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연수원 신축	공개
28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산장 신축	공개
29	여수 흥국사 홍교 주변 산림공원 조성사업	공개
30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건축물 신축	공개
31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공개
32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화장실 신축	공개
33	강진 백련사 사적비 주변 선·차문화체험센터 건립(3차)	공개
34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템플스테이 수련관 건립	공개
35	안양 증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숙박시설 신축	공개
36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등 탁본	공개
3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검토사항】		
38	서울 송례문 종합복구 계획 검토	공개
39	여수 진남관 보수공사 계획 검토	공개
40	여수 흥국사 대웅전 보수공사 계획 검토	공개
41	나주 불회사 대웅전 보수공사 계획 검토	공개
42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안전부의 기준 조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43	공주 마곡사 대응보전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보고	공개
44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2차)	공개
45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지산동 당간지주 주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허가사항 변경) -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전통불교문화예술관 신축(허가기간 연장)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명륜당 교육장 사용(허가사항 변경) -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노상주차장 설치 및 도로보수 -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근생시설 신축 및 진입로 개설(전○○) -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물 진입로 개설(조○○)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옹벽 설치 -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주변 박석깔기, 계단 석축 설치 -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4-06-001

1. 의성 대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의성 대곡사 대웅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에서 의성군에 소재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의성 대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동 사항은 2014년 건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2014.04.1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4.05.13.~'14.06.12)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160호 대곡사대웅전(大谷寺大雄殿)
 - 소재지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94번지
 - 지정일 : 1982. 08. 04.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의성 대곡사 대웅전(義城 大谷寺 大雄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곡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94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건축면적 : 84.36㎡
 - 양 식 : 정면3칸, 측면2칸, 다포계, 팔작지붕, 5량가
 - 보호구역 : 3,165.64㎡(경북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94번지)

라. 현지조사의견(2014.02.13)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4.02.13	대상문화재	대곡사 대웅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 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대곡사 대웅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 년 3 월 3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대곡사 창건은 고려 이전으로 사료되나, 대웅전은 임란 이후 중창된 17세기 중반의 건축물이다. 대곡사는 북쪽으로 가까이 낙동강이 있고, 서측에 비봉산과 동남측의 독점산 사이의 산촌에 위치하여 자연 환경이 아주 좋다.

대곡사의 중심 건물은 대웅전과 범종각이고, 그 외의 나한전, 산신각, 일주문 및 여러 요사채 등은 1990년 이후의 건축물이다. 사찰 입구에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일주문을 지나면, 담장 없이 훤히 터진 사찰 앞에서 어느 곳으로든 진입할 수 있다. 절간 안에서도 공간을 구획하는 담이나 시설이 없어서 가람 공간의 위계구분이 없고, 동선의 구분이 자유롭다.

고려 문인 재상 이규보의 「대곡사탐방시구」를 비롯하여 고려와 조선의 문인과 정객들의 글이 많이 남아있어서, 과거엔 유명 사찰이었음을 입증한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대곡산은 신라말 때 창건한 사찰로 추측되고, 고려시대에 대곡사로 중창되었다가, 조선 중기에 중창되면서 대곡사라고 명명했다.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본 대웅전은 임란으로 소실된 것을 1687년에 중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면3칸, 측면2칸 조선 중기의 다포계양식 겹처마 단층 팔작기와지붕이다.

두벌대 기단의 계단을 오르면 자연석 덩벙초석 위에 원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건물규모에 비해 비교적 단면이 큰 편인데 특히 우주는 평주보다 약 20% 굵은 부재를 사용하여 더욱 눈에 띈다. 기둥처럼 창방, 평방 및 보 등의 다른 구조부재들도 기술적 가공이나 의장적 가공을 최소화 하였으나 가구의 결구는 확실·정확하여 안정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정면과 양측면의 기둥뿌리에 있는 큰 구멍 흔적은, 기단 상면과 하인방(문지방) 상면까지 높이가 높은 것으로 보아, 뒷마루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정면의 창호는 중간칸과 협칸의 폭이 동일한데도, 중앙칸은 4분합 띠살창이고, 양협칸은 3분합 띠살창으로 되었고, 창틀의 손상이 심하다. 후면 중앙칸에는 띠살창이 있고, 서측 협칸에는 쌍영창구조가 있고, 동측 협칸은 회벽으로 변화가 많다.

다포계 형식의 포작은 내외 3출목이며, 건물의 전후좌우4면의 기둥간격이 모두 동일하고, 모든 주간에 2구씩 포를 배치하여 외목도리를 받아서 안정감과 통

일성이 좋다. 외부포벽은 회벽으로 마감되어있고, 내부에서는 불상으로 장식했다.

천정은 중심부에 우물천정이고 그 사방으로도 빗천정으로 하고, 불단 상부에 단집을 구성하여 장엄되었다.

팔작지붕의 용마루 양편에는 용두를 놓았고, 지붕물매는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장연의 배치 및 부재가 고르지 못하며 부연도 여러 형식이 혼재하고 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전반적으로 부재의 노쇠, 부식, 파손이 많고, 외부단청은 거의 퇴색되었으며, 내부단청은 용그림이 많은 편이고, 퇴색, 변질이 심하다.

기둥이나 보 등의 구조부재는 섬세한 가공이나 미적의장성은 최소화하고, 가구의 구조형식은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결구되어 있다. 정면3칸, 측면2칸 건물의 전후 좌우면 기둥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주간에 두 구씩의 공포를 배치하여 지붕하중을 안정되게 뺄게 함은, 건축공간계획과 구조계획이 함께 설계된 세심하고 능숙한 기법을 볼 수 있다. 외부3출목포작의 주두·첨차·소로의 짜임이 정연하며, 상중하의 쇠서 길이를 길게 제작했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쇠서의 모양과는 달리 쇠서 첨단을 수직으로 절단했으며, 출목첨차의 상면 부분을 공간으로 파서 곡선처리 했다. 내부 3출목포작은 첨차와 살미를 중첩판구조로 하고 운공초각형으로 살미를 처리하였다. 내외의 공포구조와 살미 의장성이 본 대응전의 특징 중 하나이다.

막새기와에서 명문이 제시된 1604년과 평방의 중간면에 한자로 주상전하, 왕비전하가 쓰여진 사료도 본 대응전을 내세우는 특징이며 좋은 사료가 된다.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부재의 노화, 부식, 파손과 훼손이 많아 세심한 원형확인 고증으로 복원이 요구된다. 단청은 전문가 조사로 단청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담장이나 수목으로 가릴 것은 가리고 일주문에서부터 주입동선을 명확히 하여 사찰로서의 위계와 질서가 요구됨.

■ 종합의견

- 17세기 중반의 작품으로, 큰 구조부재의 기술적·의장적 가공을 최소화 했으나, 가구 구조 형식이 간결 명확한 기법의 우수함이 인정됨.

- 평면 및 공간계획을 기둥·공포배치와 함께 계획설계됨이 한국 전통 건축 기법의 훌륭한 사례로 인정됨.
- 왕과 왕비의 축복을 위한 글씨와 단청형식 및 의미의 특수성이 인정됨. 따라서 조선중기 목조건축의 시대성과 건축설계기법 및 구조기법 등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보물의 가치가 인정됨.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4.02.13	대상문화재	대곡사 대웅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 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대곡사 대웅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 년 3 월 3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1. 조 사 자 : ○○○, 한국건축사, ○○대학교, 교수

2. 문화재종류 : 보물

3. 문화재명칭 : 의성 대곡사 대웅전(義城 大谷寺 大雄殿)

4.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대곡사¹⁾는 비봉산 산자락이 양측으로 길게 뻗어 내리면서 생긴 큰(大) 골짜기(谷) 맨 위쪽 산중턱 아래에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방으로는 멀리 일월산맥이 뻗어 내린 독점산이 바라보이고 이 두 산 사이에는 남북으로 긴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대곡사의 형국은 비봉산을 동쪽에서 바라보면 봉이 날개를 펼치고 앉아 있는 모습이며, 남쪽에서 보면 봉이 날개 짓을 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서쪽에서 보면 장군이 투구를 쓰고 서있는 모양새이고, 북쪽에서 건너다보면 옥녀봉을 바라다보는 웅골찬 장군 기상을 읽게 한다.

대곡사 위쪽으로 약1Km 정도 올라가면 부속암자인 적조암이 있는데, 원래 한창 번성할 때는 적조암 이외 8개소의 속암(구암·염불암·회동암·적멸암·원적암·보덕암·양진암·봉서암)을 거느린 큰 사찰이었다고 한다.

대곡사는 의성군의 대표적 사찰 중 하나로 이 지역의 중요한 불교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연혁·유래 및 특징 : 대곡사는 고려 공민왕 17년(1368) 지공(指空)과 나옹(懶翁) 등이 창건하였다. 창건 시기는 1960년 앞 텃밭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후기 조성 추정 금동불상과 고려 초기의 다층석탑²⁾ 그리고 이규보의 ‘대곡사 탐방시구(探訪詩句)’ 등의 자료로 미루어 보아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1605년(선조 38) 탄우(坦祐)가 중창하였다. 이때 설선당·우화당·백수당·취운당과 두 월료·담월료·남월료·원통료를 짓고, 1644~83년에는 서상실·향로전·53불전·시왕전·범종각·불이문을 창건했다. 이외에도 성행당·극락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대웅전은 1687년(숙종 13)에 태전선사가(太顛禪師)가 다시 중건하였다. 현재 대곡사에는 대웅전·명부전·나한전·범종각·종각·산신각·다층석탑·일주문·요사·종무소 등이 있다. 맨 앞쪽에 자리 잡은 일주문을 지나서 개울을 건너 조금 오르면 범종각이 놓여 있고 그 뒤편 한단 높은 곳에 중정을 중심으로 둘러싼 건물들이 중심영역을 이루고 있다. 중심영역은 대웅전이 중정과 마주하며 동향으로 앉아 마당에 놓인 다층석탑과 그 앞의 범종각과 일축선을 이루고, 중정 좌·우측에는 각각 요사채와 명부부전이 대향하고 있다. 이런 산지중정식 가람배치는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일반화된 유형으로 대웅전의 중건(17세기 후반) 때 모습이라 여겨진다. 대웅전 좌측에는 나한전, 나한전 좌측 편 앞으로는 요사채와 종무소, 대웅전 뒤편 우측에는 산신각, 범종각 좌측에는 종각이 자리 잡고 있다.

1)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0호임.

2)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05호임.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이다. 주칸은 도리간의 3칸과 보간의 2칸을 동일하게 잡았는데, 도리간 주칸이 약 2치정도 넓다. 내부는 전체에 우물마루바닥을 깔고, 불단은 후열 평주선보다 뒤쪽에 배면 벽체에 붙지 않게 앉혔다. 이런 불단의 위치는 평면구성이 같은 다포계 팔작 불전에서는 18세기 이후 점차 줄어드는 모습으로 중건(17세기 후반) 당시의 경향을 읽게 한다. 불단의 뒤에는 후불벽을 설치하고, 위에는 네 기둥을 세워 받친 중층 보궁형 단집으로 장엄하였다. 큰 규모의 단집과 불단의 운문과 안상문 등의 조식은 불전의 연륜을 느끼게 하는 수작이다. 한편, 정면과 좌·우 측면 기둥의 하부 하방 높이쯤에 흠 흔적이 남아 있다. 흠이 일정한 형태인 것으로 보아 쪽마루의 귀틀 자리로 여겨진다. 쪽마루 설치와 철거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불전 정면에 마루를 둔 예는 18세기 이전 건물³⁾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으며, 불전 평면유형 편년을 살펴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라 여겨진다.

기단은 전저후고의 지형에 따라 정면은 화강암 장대석 바른층으로, 나머지 면은 자연석 허튼층으로 쌓았다. 정면 기단 가운데에 화강암 오름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정면과 좌·우측면 창호 앞에는 디딤돌을 두었다.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활주가 서 있는데, 상부 추녀에 둥근 흠 흔적으로 보아 지금의 위치는 원래 자리가 아닌 것 같다. 활주의 초석은 정면에는 정팔각형 정평초석이 놓여 있고, 배면에는 막돌 덩벙 초석이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옛 활주는 팔각형일 가능성이 높다. 막돌 초석 위에 모두 원주를 세우고 약한 민흘림을 두었다. 귀솟음을 주고 지붕면에서 양측으로 오름 정도를 고려하여 창호의 웃틀과 창방의 춤을 적절히 키워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게 했다.

정칸에는 4분합굽널띠살 들문을 달고, 양측 퇴칸에는 3분합굽널띠살여단이문을 달았다. 퇴칸의 각 문짝마다 웃틀에 돌쩌귀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들어열개 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전 정면의 창호를 각각 들어 올리게 한 형식은 오래된 모습이며, 건설한 판재 굽널의 세로 중간막이와 투밀이 기법도 건물의 연륜을 읽게 한다. 좌·우측면의 창호는 모두 건물 앞쪽 칸에 외여단이 굽널띠살 문을 내었다. 배면의 정칸에는 외여단이 굽널띠살 문이 나있고, 좌·우측 퇴칸에는 벽체로 막혀있다. 우측 퇴칸은 벽체 가운데 연귀맞춤 창틀과 그 중앙에 제비초리 맞춤한 가운데설주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영쌍창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전 배면의 좌·우 퇴칸 창호는 좌·우 동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 불전도 좌측 퇴칸에 우측과 동일한 영쌍창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좌·우측면과 배면의 벽체에 중인방 없이 세로 벽선을 세웠다. 영쌍창과 세로 벽선은 18세기 이전 건물⁴⁾에서 주로 찾

3) 봉정사 대웅전(국보 311호, 조선전기), 강화 정수사 대웅보전(보물 161호, 1689년), 개목사 원통전(보물 242호, 1457년) 등으로 이들의 뒷(또는 쪽)마루도 설치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시대를 올려 볼 수 있는 형식임은 짐작케 한다.

4) 영쌍창 :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 고려), 안동 봉정사 대웅전(보물 55호, 조선 초기) 등, 세로 벽선 :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보물 181호, 17세기 초), 청송 대전사 보광전(보물 1507호, 17세기 후반) 등

아 볼 수 있는 고식이다.

공포는 내·외3출목의 다포형식으로 주상과 네 면에 주간포가 각기 2구씩 배열되어 있다. 첨차는 마구리 단부는 직절하고 그 밑면은 교두형으로 각고 윗면에는 고식의 공간 안을 두었다. 주심과 내·외1출목의 첨차는 대·중·소, 내·외2출목은 중·소, 내·외3출목은 소첨차로 구성한 모습이 정연하다. 살미는 4제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부는 상하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는 일체를 이루고 있다. 외부 살미의 1·2·3제공은 휘어 오른 양서형으로 그 마구리는 직절하였다. 3제공 위로는 4제공과 운공이 초각으로 조식되어 있는데, 주상은 운공 없이 양두가 둥그스름하게 끝걸기 되어있다. 내부 살미는 초각한 살미를 중첩한 운공으로 구성했다. 내부 살미가 초각으로 일체화 되는 시기는 17세기로 내·외3출목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⁵⁾ 외부 귀포의 귀한대는 1·2·3제공을 외부 살미와 같은 양서형으로 하고 4제공과 운공을 각각 운형과 용두형으로 조식하였다. 좌우대의 주심과 외2출목은 양서형이고, 외1출목과 3출목은 교두형이다. 내부 귀포의 귀한대는 초각형과 반원형으로 꾸미고 맨위를 용두형으로 구성했다. 좌우대의 주심은 대·중·소첨차로, 출목은 도매첨과 병첨으로 짜 맞추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다포계에서 i)내외출목수가 같은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시기적으로 선행하고, ii)외부 살미는 교두형-쇠서형-초각쇠서형-연화쇠서형으로, iii)내부 살미는 교두형-초각형-연화쇠서형으로 일체화되며, iv)귀포는 교두형-쇠서형(초각형)-연화쇠서형으로 변화되는 대체적인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천의 양상은 17~18세기를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건물도 중건(17세기 후반) 당시의 경향과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상부가구는 5량 가로 대량 위에 화반형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게 하고, 종보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지지하도록 하였다. 대량은 특이하게 상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 보는 4제공 위에 놓고 외목도리를 받게하고, 위의 보는 아래 보 주심 상부에 베개목을 얹고 그 상부에 놓아서 주심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층량은 측면 평주의 주상포 위에 뿌리를 얹고 대량의 상하 부 사이에 머리를 끼웠는데, 머리는 장식하지 않은 직절형이다. 층량 위에는 방형 판대공이 외기틀을 받고 있다. 내3출목 위의 장여와 내목도리 사이에는 방형화반을 세워서 사방으로 내벽을 설치하였다. 내벽 위는 내목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돌림대를 초각하여 설치한 빗반자와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꾸민 다채로운 우물반자의 장엄이 수려하다. 불단 좌측 상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종이 달린 용조각한 긴 막대는 불교의식 때 사용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앞선 건물에서 볼 수 있다. 평방에 왕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비는 ‘主上殿下’와 ‘王妃殿下’라고 쓴 몇 군데의 전패 그림이 눈길을 끈다.

옥개부는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추녀 마구리에는 풍경을 달고 용마루 양단부에는 사

5) 부여 무량사 극락전(보물 356호, 1679년),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보물 608호, 17세기 초), 익산 송림사 보광전(보물 825호, 1628년) 등이 유사하다.

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한 용머리 장식기와의를 올려놓았다.

단청은 전체적으로 모로 단청을 시채하였는데, 탈색과 후대 시채 등의 훼손으로 인해 옛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 가고 있다.

6.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대곡사 대웅전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i)공포의 동일한 내·외출목수와 내·외살미의 조식 기법, ii)배면 개구부의 창호구성(영쌍창+문+영쌍창), iii)불단의 조성배치, iv)내부의 지나친 장식을 배제한 장엄, v)건물 정면의 외부 마루 흔적 등은 중건(1687년) 당시의 시기적 경향을 읽을 수 있는 모습이다.

의성군의 대표적 사찰 중 하나인 대곡사는 이 지역의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 불교 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8세기 전후의 양식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편년자료로서의 건축사적 가치가 크므로 보물로 지정하였으면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4.02.13	대상문화재	대곡사 대웅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 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대곡사 대웅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 년 3 월 3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대곡사가 있는 의성군 다인면은 조선초까지 예천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1914년에 의성군에 편입되었다. 다인면의 북동부에는 해발 579m의 비봉산, 해발 312m의 독점산, 문암산을 연결하는 일월산맥이 뻗어 험준한 산지를 이루고, 그 밖에는 넓고 기름진 평야를 이루고 있다. 그 사이에 큰 골짜기가 형성되었으며, 그 골에 사찰이 있다. 비봉산은 동쪽에서 바라보면 봉이 날개를 펼치고 앉아있는 모습이 고, 남쪽에서 보면 날개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서쪽에서 보면 장군이 투구를 쓰고 서있는 형국이며, 북쪽에서 건너다 보면 옥녀봉을 바라다보는 장군 기상이다. 이 산 중턱 아래 골짜기에 대곡사가 있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이규보의 『동국이상집』에 실려있는 ‘대곡사 탐방시구’와 ‘대곡사 창건 전후 사적기’에는 절을 처음 창건한 시기는 신라 때라고 하나 세월이 오래되고 유구 등이 없어 알 수 없다.

대곡사 관련 사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4권 경상도 예천군의 「불우」 조 <신증>에 ‘대곡사(大谷寺) 비봉산(飛鳳山)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곡사는 인도승 지공이 원나라와 고려를 다니면서 불법을 펼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절이라 전한다. 고려 공민왕 17년(1368)에 지공이 세운 목적에 따라 대곡사라는 이름을 붙여지었다.

대웅전 앞 다층석탑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고려초에 창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조선 선조 31년(1598) 정유재란 때 대부분이 무너져 선조 38년(1605)에 탄우대사가 다시 세웠다. 그 후 숙종 13년(1687)에 태전선사가 현재의 모습으로 고쳐 세우면서 이곳 태행봉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백리나 되는 긴 계곡이 보인다고 해서 대곡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대웅전은 정면3칸, 측면2칸 조선 중기의 다포계양식 겹처마 단층 팔작기와지붕이다. 두벌대 기단의 계단을 오르면 자연석 덩벙주초 위에 원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건물규모에 비해 비교적 단면이 큰 편인데 특히 우주는 평주보다 약 20% 굵은 부재를 사용하여 더욱 눈에 띈다. 기둥처럼 창방, 평방 및 보 등의 다른 구조부재들도 기술적 가공이나 의장적 가공을 최소화 하였으며, 가구의 결구

는견실하여 안정감이 느껴진다. 정면과 양측면의 기둥 하부에 있는 장부 흔적은 봉정사 대웅전과 같은 형식의 뒷마루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정면의 창호는 중간칸과 협칸의 폭이 동일한데, 중앙칸은 4분합 띠살창이고, 양협칸은 3분할 띠살창으로 설정하여 어칸의 위계를 높였다. 후면 중앙칸에는 띠살창이 있고, 서측 협칸에는 영쌍창구조가 있으며, 동측 협칸은 회벽으로 처리하였다.

다포계 형식의 포작은 내외 3출목이며, 건물의 전후좌우4면의 기둥간격이 모두 동일하고, 모든 주간에 2구씩 포를 배치하여 외목도리를 받아서 안정감과 통일성을 주었다. 외부포벽은 회벽으로 마감되어 있고, 내부에서는 불상으로 장엄했다.

천정은 중심부에 우물천정이고 그 사방으로도 빗천정으로 하고, 불단 상부에 단집을 구성하여 장엄되었다. 팔작지붕의 용마루 양편에는 용두를 놓았고, 지붕 물매는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기둥이나 보 등의 구조부재는 섬세한 가공이나 미적의장성은 최소화하고, 가구의 구조형식은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결구되어 있다.

정면3칸, 측면2칸 건물의 전후 좌우면 기둥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주간에 두 구씩의 공포를 배치하여 지붕하중을 안정되게 받게 하여 건축공간계획과 구조계획이 함께 설계된 세심하고 능숙한 기법을 볼 수 있다. 외부 3출목포작의 주두·첨차·소로의 짜임이 정연하며, 상중하의 쇠서 길이를 길게 제작했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쇠서의 모양과는 달리 쇠서 첨단을 수직으로 절단했으며, 출목첨차의 상면 부분을 공간으로 파서 곡선처리 했다. 내부 3출목포작은 첨차와 살미를 중첩판구조로 하고 운공초각형으로 살미를 처리하였다. 내외의 공포구조와 살미 의장성이 본 대웅전의 특징 중 하나이다.

<종합의견>

17세기 중반의 작품으로 구조부재의 기술적·의장적 가공을 최소화하면서 가구 구조 형식의 간결 명확한 기법을 잘 간직하고 있음. 또한, 왕과 왕비의 축복을 위한 글씨와 단청형식 및 의미의 특수성이 인정됨. 따라서 조선중기 목조건축의 시대적 특성과 구조기법 등을 잘 간직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됨.

2.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강원 인제군 소재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 인제군 소재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 동 사항은 2014년 건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2014.04.1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4.05.12.~'14.06.11)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인제군수
- (2) 대상문화재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1호 봉정암석가사리탑(鳳頂庵石迦舍利塔)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7번지
 - 지정현황 : 1971. 12. 1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麟蹄 鳳頂庵 五層石塔)」
 - 소유자(관리자) : 봉정암(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말사)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7번지
 - 조성연대 : 고려시대
 - 수 량 : 1기
 - 재 질 : 화강암
 - 규 모 : 높이 3.78m, 대좌 폭 1.06m

라. 현지조사의견(2013.10.23)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3. 10. 23	대상문화재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미술사(불교조각)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석탑		
	② 문화재 명칭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설악산 소청봉 아래 해발 1244미터 높이에 위치한 봉정암 소재		
	④ 연혁·유래 및 특징	- 동산은 <붙임1>란에 기재 -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동산은 <붙임2>란에 기재 -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동산은 생략 - <보호물> - 동산은 생략 - <보호구역> - 동산은 생략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동산은 생략 -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동산은 생략 -		
종합의견	봉정암 오층석탑은 형태가 안정적이고 고대의 일반형 석탑이 단순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설악산 정상에 세워져 있다는 입지적 여건 및 불사리신앙의 전승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년 1월 7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1>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31호
- 명 칭 :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 소 유 자 : 봉정암(대한불교조계종 제 3교구 신흥사 말사)
-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77번지
- 수 량 : 1기
- 규 격 : 전체높이 3.78m
- 재 질 : 화강암
- 형 식 : 5층 석탑
- 조성연대 : 고려후기
- 현 상 :



사진 1. 봉정암 오층석탑, 고려후기,
강원도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은 설악산 소청봉 아래 해발 1244미터 높이에 위치한 봉정암의 경내에 있는 고려후기 석탑이다(사진 1). 봉정암 적멸보궁에서 산 정상 을 향해 올라가면 이르게 되는, 사방의 시계가 트인 위치에 세워져 있는 오층석탑은 자연암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석재는 탑 주변에서 채석되는 입자가 거친 화강암이다. 현재 석탑의 표면은 지의류와 이끼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으나 탑 자체의 형태는 비교적 완전한 편이다.

오층석탑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는 「봉정암 중수기」(1781년)에 자장율사가 당에서 얻은 석가불의 사리 7과가 이 탑에 봉안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이 탑이 ‘석가사리탑’ 혹은 ‘뇌사리탑(불뇌보탑)’으로 불리면서 봉정암은 통도사,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와 함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백담사사적기』에 수록된 「봉정암중수기」(1781년)에 따르면 봉정암은 조선후기에 이르도록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쳤다. 또한 「설악봉정암칠창사적기」에는 승려 설정이 영조 24년(1748)에 사리탑에 참배하기 위한 ‘배탑대’를 만들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봉정암은 6.25 한국전쟁 때 전소되어 석탑만 전해오다가 1980년대부터 중창불사가 이루어져 오늘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사진 2. 봉정암 오층석탑 부분

오층석탑은 넓은 암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사진 2), 바위 윗면을 치석하여 2개의 단을 만들고 그 주변에 16개의 연잎을 돌려 기단부를 조성하였다. 현재 지의류의 침식에 의해 짙은 회색 얼룩으로 덮혀 잘 보이지 않으나, 연판 안쪽으로 또 하나의 연잎이 선각되어 복엽(複葉)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위에 올려진 탑신석[몸돌]은 3층까지 모서리에 우주(隅柱, 기둥)가 모각되어 있고 탑신석

위에 올려진 두꺼운 옥개석[지붕돌]은 낙수면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며 끝부분만 살짝 반전된 형태이다. 옥개석 아래로는 각 층마다 3단의 옥개받침이 두껍고 투박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옥개석의 윗면에는 탑신받침이 새겨져 있다. 상륜부는 연꽃 봉오리 혹은 보주 형태의 석재를 올려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 내용 및 특징 :

봉정암 오층석탑은 일반형 석탑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그 구성이 단순하고 탑신의 체감율도 적은 편이어서 고려 후기 석탑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단을 생략하고 자연암석 위에 탑을 세우는 것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것으로서 유사한 예로는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사진 3),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동삼층석탑, 충주 미륵대원 오층석탑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탑들이 기단 없이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하여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나말여초기부터 퍼지기 시작했던 산천비보사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우리민족 고유의 산악숭배, 천신신앙 등이 불교와 습합되면서 나타난 현상



사진 3.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고려시대, 충북 영동

으로 이해된다.

봉정암 오층석탑은 하늘과 맞닿는 산 정상에 자연암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입지조건 뿐만 아니라, 산지가람의 지형적 여건 속에서 불사리신앙의 전승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또한 고대의 일반형 석탑이 고려후기에 단순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 불교건축 및 미술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문화재라고 판단된다.

<붙임2>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은 자연암석 위에 세워진 고려시대 석탑으로서 설악산 정상에 세워져 있다는 입지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산지가람의 지형적 여건 속에서 불사리신앙의 전승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또한 고대의 일반형 석탑이 고려후기에 단순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불교건축 및 미술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문화재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3. 10.23	대상문화재	봉정암 석가사리탑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인제 봉정암 석가사리탑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지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지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지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지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 ○ ○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해발 1,244미터인 설악산 소청봉 아래 위치하여 남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봉정암의 석탑이다. 인제군 용대리에서 시작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봉정암 전방 약 200미터 지점에 석탑이 우뚝 솟아있다. 높게 치솟은 암반 위에 세워져 전방으로 탁 트인 시계를 확보하고 있다. 설악산 비경 중 하나인 용아장성과 공룡능선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다고 전하며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 신자는 물론 등반객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2. 연혁, 유래 및 특징

봉정암 석가사리탑 실측조사보고서(2012, 봉정암)에 의하면, 봉정암은 644년(신라 선덕왕13)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당나라에서 가져온 진신사리를 봉안했다고 한다. 667년(문무왕17)에 원효대사가 첫 중건을 했다고 하며 고려중기인 1188년 보조국사가 다시 중건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용운이 쓴 백담사사적기(1923)에 1648년(인조25) 환적의천, 1678년(숙종4) 등운, 1748년(영조24) 설정이 중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1950년 한국전쟁으로 석가사리탑을 제외한 암자는 전소되었다가 1960년대 이후 중창이 시작되어 1991년 적멸보궁을 비롯하여 일주문, 해탈문, 산신각, 요사, 석등 등이 세워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석가사리탑은 부처님 사리 중에 특히 뇌사리를 봉안하였다 해서 ‘불뇌보탑’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거대한 바위 위에 따로 기단부를 설치하지 않고 바위 자체를 기단으로 삼은 점이 특징이다. 바위 윗면을 다듬고 그 위에 5층 석탑을 세웠다. 초층 탑신이 놓이는 바닥에는 4면에 3개씩 그리고 각 모서리에 1개씩 단엽 단판 연화문을 새겼다.

탑신석에는 각각 우주가 새겨지고 1층 탑신이 다른 층에 비해 높게 조성되어 있다. 옥개석은 매 층 각형 3단의 옥개받침을 올리고 낙수면은 1층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지니고 위로 올라가면서 경사가 급해진다.

전체적인 형상으로 보아 조성시기는 고려시대 후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고려시대 후기의 석탑으로,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기단부를 형성한 점에서 지정된 경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오층 석탑의 각 부재가 본래의 것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자장율사의 창건설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나 오래 전부터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 석탑으로 전하면서 국내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 전하고 있다.

4. 종합의견

설악산의 빼어난 경관을 지닌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불사리를 봉안한 석탑으로 알려져 왔다는 점에 문화사적 의미가 있다. 진신사리 신앙의 거점 중 하나로 오랫동안 존송되어 왔으며 고려시대 후기 석탑의 원형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3.10.23	대상문화재	봉정암오층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1호)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미술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봉정암 오층석탑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지작성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지작성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강원도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2월 3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1>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1호
- 명 칭 : 봉정암 오층석탑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암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2리 690 봉정암
- 수 량 : 1 기
- 규 격 : 높이 3.6m
- 재 질 : 화강암
- 형 식 : 오층석탑
- 조성연대 : 고려시대(추정)
- 현 상

봉정암 약300m 전방에 형성된 거대한 암벽위에 건립되어 있는 높이 3.6m 규모의 일반형 오층석탑이다. 본래 석탑은 기단부·탑신부·상륜부의 3부분이 조화를 이루며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식임에 비해 이 석탑은 기단부를 조성하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암벽을 기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석탑이 세워진 암벽의 상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다듬고, 연판은 각 면에 3구씩, 모서리에 각 1구씩 모두 16판의 단엽단판 연화문을 새겼다. 연화문은 모서리의 것이 각 면의 그것보다 크게 조성되었는데, 단조로운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판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조성하고 있어 마치 仰蓮과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암반의 평면에 연화문을 조식하고 그 중심에 오층탑신을 놓은 까닭에 석탑은 연화문이 받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구도는 불상의 대좌에서 상대석에 양연을 조식하고, 그 중심에 불상을 안치하는 것과 같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연화좌 위에 자리한 불상과 같은 의미의 부여라 해석할 수 있다.

암반의 상면에는 낮고 넓은 각형 받침 위에 다시 탑신의 너비보다 조금 넓은 높직한 각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하고 5층탑신을 놓았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1석을 조성되어 이 석탑의 건립에는 상륜부를 포함해 모두 11매의 석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탑신석에는 각각 양 우주가 조출되었고, 1층탑신이 다른 층에 비해 높게 조성되어 일반형 석탑의 양식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매층 각형 3단의 옥개받침을 조출하고 있어 통일된 수법을 보이고 있다. 낙수면은 1층에서는 탑신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지니고 있지만, 상층으로 갈수록 짧고 급하게 조성되었다. 이같은 양상은 초층탑신에 비해 상층으로 갈수록 낮고 좁아지는 탑신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의도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처마는 두께가 일정하고, 두텁게 조성되었고, 전각으로 갈수록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전각부는 완만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정상에는 1석으로 조성된 연봉형의 보주를 놓았다.

이 석탑은 높게 치솟은 암반위에 건립됨으로써 전방으로 탁 트인 시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찰의 창건은 선덕여왕때로 전하고 있지만, 탑신석의 체감과 옥개석에 구현된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 건립된 석탑으로 추정된다.

○ 특 징

봉정암오층석탑은 고려시대 후기에 건립된 일반형 석탑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양식적으로는 크게 부분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석탑이 지닌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단부를 생략하고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아 건립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석탑은 어느 시대에 건립된 것이던 1층 또는 2층의 기단을 구비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아 건립된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말기인 9세기에 건립된 경주 남산 용장사곡사층석탑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석탑은 남산 용장사곡 정상 가까이에 있는 돌출된 자연암석 상면에 각형 2단의 괴임대를 각출하고 그 위에 상층기단과 탑신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상·하 2층기단으로 건립되던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양식에서 하층기단이 생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 암반을 하층기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수법은 평지에서도 적용되어 경주 남산리동삼층석탑과 경주 서악리삼층석탑, 경주 남산 용장사계폐탑⁶⁾에서는 보이는 石塊形基壇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탑의 기단은 각각 8매의 괴석을 2단으로 쌓은 점으로 보아 자연암석의 형태를 평지에 재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⁷⁾ 이상과 같이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아 석탑을 건립하는 것은 佛舍利를 봉안한 불탑 자체를 宇宙의 軸으로 생각하는 신앙적 형태에서 볼 때 기단 자체를 불교의 우주관에서 말하는 須彌山으로 볼 수도 있지도 않을까 한다.⁸⁾ 나아가 평지에 괴체형 석재를 쌓고 탑신부를 올린 형태의 석탑 역시 용장사곡3층석탑에서 보인 자연암석의 형태를 평지에 재현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며,⁹⁾ 궁극적으로는 9세기 이후에 성행하는 山川裨補思想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⁰⁾ 따라서 자연

6) 張忠植, 『新羅石塔研究』, 一志社, 1987, p.84.

7) 秦弘燮, 「統一新羅時代 特殊樣式의 石塔」, 『考古美術』158·159合輯, 韓國美術史學會, 1981. p.24.

8) 張忠植, 주 1의 책, p.97.

9) 秦弘燮, 주 2와 같음.

암반에 석탑을 건립한 봉정암오층석탑의 건립 위치에 관한 문제는 신라말기인 9세기에 서 사상적인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확립된 석탑 건립의 또 다른 규범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안동 막곡동삼층석탑, 안동 니천동삼층석탑, 영동 영국사 망탑봉삼층석탑, 홍천 양덕 원삼층석탑, 영암 월출산마애불 전방 용암사지삼층석탑, 안동 대사동모전석탑, 법계사 지삼층석탑, 영양 삼지동석탑을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 자연암반을 기반으로 삼은 석탑이 건립되게 된다.¹¹⁾ 따라서 봉정암 오층석탑에서 보이는 자연암반을 기반으로 삼아 건립되는 문제는 이 석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일신라시대로부터 시작된 양식이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봉정암 오층석탑은 해발 1,200m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현존 하는 국내 석탑 중 가장 높은 지점에 건립되어 있다.

석탑은 설악산의 비경 중 하나인 용아장성과 봉정암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건립의 위치는 멀리서도 탑을 바라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탑에서 볼 때도 佛法이 멀리까지 전파된다는 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암반을 기반으로 삼아 건립된 대부분의 석탑은 건립위치에 있어 높은 지대이거나 강을 끼고 있어 넓은 視界를 확보하고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석탑이 건립되는 사상적 근원은 9세기에 등장하여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風水圖讖說에 그 근원을 둘 수 있고, 결국은 佛力에 의한 山川裨補思想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 따라서 자연암반을 기반으로 삼아 건립한 봉정암 오층석탑은 건립된 위치는 앞서 언급한 석탑들과 같은 맥락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역시 山川裨補思想에 의해 건립된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진신사리를 봉안한 석탑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는 소위 5대 적멸보궁이라 불리우는 사찰이 있다. 이들은 영취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을 일컫는데, 봉정암이 바로 이중의 하나이다. 이들 사찰의 창건은 모두 자장율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통도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귀국할 때 가지고 왔다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적멸보궁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법당 내에는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창을 내어 금강계단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즉, 금강계단에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10) 秦弘燮, 주 2의 논문, p.27

11) 秦弘燮, 「異形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考古美術』 138·139 合輯, 韓國美術同人會, 1978, p.p. 96-109. 및 「異形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補」, 『考古美術』 146·147 合輯, 韓國美術同人會, 1980, p.p. 25-30. 成春慶, 「靈岩地方의 佛教文化遺蹟」, 『靈岩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博物館, 1968, p.203.

12) 秦弘燮, 「異形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考古美術』 138-139合輯, 韓國美術同人會, 1978, p.p.96-109

있다는 신앙이 이같이 구도를 형성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봉정암 역시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층석탑에는 그가 가지고 온 진신사리가 봉안되었다는 믿음으로 인해 봉정암 본존불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신사리가 봉안되었다는 믿음으로 건립된 조형물은 적멸보궁인 통도사 금강계단, 정암사 수마노탑, 법흥사 사리탑과 더불어 금산사 방등계단, 달성 용연사 계단, 법주사 석가세존 사리탑, 안심사 계단, 건봉사 치아사리탑등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방형으로 조성한 2층의 석조 기단 상면에 석종형부도 양식의 탑신을 놓거나, 전통적인 팔각형의 부도를 건립하는 것이 보편적인 통례이다.¹³⁾ 그런데 봉정암은 오층석탑으로 건립했다. 이처럼 진신사리가 봉안된 조형물이 불탑의 형식을 빌려 건립된 경우는 정암사 수마노탑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탑은 화강암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석회암을 벽돌과 같이 다듬어 건립한 모전석탑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적멸보궁 또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다고 전해지는 조형물중 화강암을 치석해 일반형석탑의 양식으로 건립한 예는 봉정암 오층석탑이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암반의 상면에 16판의 연화문을 조각하고 그 중심에 5층탑신을 놓아 전체적으로는 연꽃이 떠 받치는 형상을 지니고 있어 더욱 이채롭다. 아마도 진신사리가 봉안되었다는 믿음이 석탑을 석가모니 즉, 불상과 동일체로 생각한 의도라 생각된다.

<붙임2>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봉정암은 현존하는 5대 적멸보궁의 한 곳으로, 오층석탑이 건립되어 있다. 이 석탑은 비록 양식적으로는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신사리가 봉안되었다고 믿어지고 있어 佛家에서는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같이 이 석탑은 기단부를 자연암반으로 대체했다는 양식적인 면 외에도 건립의 위치와 진신사리가 봉안된 국내 유일의 오층석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5대 적멸보궁은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이 시기와 연관지을 수 있는 유물이 현존하는 사찰은 한 곳도 없다. 모두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조 조형물에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따라서 봉정암 오층석탑의 건립시기가 자장율사와 연관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13) 대체로 계단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통도사 금강계단, 안심사 계단, 금산사 방등계단의 경우에는 석종형 부도가 안치되어 있다. 이에 반해 법주사 석가세존사리탑과 건봉사 치아사리탑경우에는 팔각형 계통의 석조부도를 조성하고 있다.

있다는 믿음은 건립시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신앙은 조형물이 건립된 시기보다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신봉하는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정암 오층석탑은 건립연대나 양식보다도 진신사리 신앙의 실체로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봉정암 오층석탑은 보물로 승격해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 진입로 석축설치 및 포장 등(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에 진입로 석축설치 및 포장 등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진입로에 석축설치 및 포장 등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5.15)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예천 용문사 대장전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용문사 (내지리 39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내지리 39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00m
 - 사업내용 : 진입로 석축설치 및 황토폐장 등 주변정비
<보화루 영역>
 - 진입로 선형변경 및 황토폐장(T200, W=3.6m, 660㎡)

- 1구간 자연석배수로 해체보수(L=59m)
- 2구간 자연석석축쌓기 (1단 L=74.5m, 2단 L=62.3m, 3단 L=50m)
- 3구간 자연석석축쌓기(콘크리트 옹벽 포함, 1단 L=63m, 2단 L=43m, 3단 L=40.9m)
- 4구간 자연석배수로설치(L=37m)
- 부지정비 1식

<주차장 및 유물전시관 영역>

- 가구간 자연석배수로해체보수(L=44m), 배수로 주변 부지성토 및 황토흙포장(223m²)
- 나구간 유물전시관 진입로 자연석박석깔기(215m²)
- 다구간 유물전시관 좌측면 하부 옹벽 위 화강석부조붙이기(L=14m)
- 라구간 한식와편담장설치(H=1.2m, L=74.5m)
- 마구간 자연석석축쌓기(L=20m)
- 바구간 자연석박석 철거 후 황토흙포장 (T200, 250m²)

<서향각 후면 영역>

- A구간 자연석석축쌓기(1단 L=12.4m, 2단 L=13m, 3단 L=49m)
- 부지정비(1,200m²) 및 조경식재

<보광명전 영역>

- ㄱ형 자연석박석깔기(W=2m, 378m²)
- ㄴ형 자연석박석깔기(W=1.2m, 183m²)
- 마사토다짐(T150, 2,290m²)

라. 현지조사의견(2014.05.30)

- 주차장 부지 배수는 화장실 전면으로 배수가 되도록 정비하되, 부득이 지하 구조물이 있을 경우 현 설계대로 시행
- 유물전시관 좌측 진입로 및 석축 공사는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 대장전 전면 마당 박석포장은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며 마당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을 고려하여 배수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 보화루 영역 진입로는 원선형을 유지토록하며 전체적으로 조경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음
- 현지조사 의견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 보완토록 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4.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454-1)

가. 제안사항

대구 달성군 소재 보물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에 근생 및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생 및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2층)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2층)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권○○, 황○○
- (2) 대상문화재 : 달성 현풍 석빙고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 632
 - 지정일 : 1980. 09. 1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454-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10m
 - 사업내용 : 근생 및 다가구 주택(1동) 신축
 - 대지면적 : 150.52㎡
 - 건축면적(연면적) : 150.52㎡(379.51㎡)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3층 / 12.4m

라. 지방자치단체(달성군) 의견

- 신청한 건축물의 규모가 3구역 허용기준(2층 이하)을 초과하므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5.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451-3)

가. 제안사항

대구 달성군 소재 보물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에 근생 및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생 및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2층)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2층)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달성 현풍 석빙고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 632
 - 지정일 : 1980. 09. 1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451-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0m
 - 사업내용 : 근생 및 다가구 주택(1동) 신축
 - 대지면적 : 238.0㎡
 - 건축면적(연면적) : 139.68㎡(356.09㎡)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3층 / 11.8m

라. 지방자치단체(달성군) 의견

- 신청한 건축물의 규모가 3구역 허용기준(2층 이하)을 초과하므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6.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 운곡천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 운곡천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하천(운곡천)을 정비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공통사항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봉화군수
- (2) 대상문화재 :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원촌길 8-14 (서동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5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60m
 - 사업내용 : 운곡천 정비
 - 호안블록 : L=160m, H=4.1~6.6m
 - 돌쌓기 : L=27m, H=5.9~6.5m
 - 제방축제 : L=187m

라. 지방자치단체(봉화군) 의견

- 별도 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7.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대응전 신축(2차)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보물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에 대응전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대응전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0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조물분과 심의결과(2002.03.28) : 조건부 허가
 - 유적조사 선행하여 시행
- ※ 허가기간 내 미착공으로 허가 취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산1-1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3-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3.5m
 - 사업내용 : 대응전 신축 (기존 대응전 철거)
 - 기존 대응전 철거 : 71.6㎡ (조적조)

- 대지면적 : 952m²

구분	'02년 허가내용	금회 신청
건축면적(연면적)	99.36m ² (99.36m ²)	47.88m ² (47.88m ²)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층수/최고높이	지상1층 / 7.73m	지상1층 / 7.43m

- 발굴완료(2008. 1. 28.) : 복토 후 사업을 시행하되 조사단의 자문 받아 추진

라. 지방자치단체(아산시) 의견

-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보호구역 내 기존 대웅전 철거 및 1구역에서 대웅전 신축을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는 사항임.
- 대웅전 철거 및 신축에 대해 문화재경관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8.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묘사채 신축(2차)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보물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에 묘사채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묘사채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0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조물분과 심의결과(2002.03.28) : 조건부 허가
 - 유적조사 선행하여 시행
- ※ 허가기간 내 미착공으로 허가 취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산1-1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30m
 - 사업내용 : 묘사채 신축
 - 대지면적 : 973㎡

구분	'02 허가내용	금회 신청
건축면적(연면적)	83.7㎡(83.7㎡)	102.68㎡(102.68㎡)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목조+벽돌조/한식시멘트기와
층수/최고높이	지상1층 / 4.19m	지상1층 / 5.75m

- 발굴완료(2008. 1. 28.) : 복토 후 사업을 시행하되 조사단의 자문 받아 추진

라. 지방자치단체(아산시) 의견

-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1구역에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2002년 건물 건립으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 입면 및 경관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9.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보물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함창읍 증촌2길 10-13 (증촌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16-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5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355.58㎡
 - 건축면적(연면적) : 81.78㎡(75.48㎡)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최고높이 : 지상1층 / 5.01m

라.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2014.05.02, 전고령가야왕릉(시도기념물)) 의견

- 신청 내용이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맞지 않고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마. 지방자치단체(상주시) 의견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보물 제118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제120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및 경상북도기념물 제26호 전고령가야왕릉 1구역 허용기준 초과 건으로 진달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0.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주변 근생 및 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보물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주변에 근생 및 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계곡길 127-10 (빙계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의성군 가음면 현리리 892-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73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1동)
 - 대지면적 : 1,373.0㎡
 - 건축면적(연면적) : 109.72㎡(162.08㎡)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 8.2m

라. 지방자치단체(의성군) 의견

- 빙산사지 오층석탑에서 499m 떨어져 있는 지점이며, 현상변경 제1구역에 걸쳐 있으나 문화재에 끼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1.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청허당 증축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에 묘사채를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묘사채를 증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동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대구 동구 팔공산로 201길 41, 동화사 (도학동)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동구 도학동 50, 50-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370m
 - 사업내용 : 청허당(묘사채) 증축

구분	기존	증축	합계
건축면적	56.7㎡	+37.8㎡	94.5㎡
연면적	56.7㎡	+37.8㎡	94.5㎡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동일
층수/최고높이	지상 1층, 6.12m	지상 1층, 6.12m	동일

라. 지방자치단체(동구청) 의견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진달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2.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산신각 복원(2차)

가. 제안사항

강원 양양군 소재 국보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에 산신각을 복원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산신각을 복원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5.15)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진전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24-5
 - 지정일 : 1966. 02.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양양군 강현면 화채봉길 360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50m
 - 사업내용 : 산신각 1동 복원
 - 건축면적 : 12.87m²
 - 규모 : 정면1칸, 측면1칸
 - 양식 : 초익공

- 구조 : 한식목구조

라. 현지조사의견(2014.05.27)

- 신청부지는 근래에 신축된 요사채의 배면 인접지역으로 건물이 신축될 경우, 건물간의 간섭이 우려되고 가람배치상 맞지 않으므로 종합정비계획과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3.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가. 제안사항

강원 양양군 소재 국보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양군수
- (2) 대상문화재 :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2
 - 지정일 : 1966. 02.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2-3 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34m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 내용 : 기존 콘크리트포장도로(폭 5.0m) 확·포장(폭 7.0m), 길이 371.2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인접한 성토구간부터 진전사지 입구까지는 도로확장

없이 포장공사만 하고 그 외 잔여구간은 계획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4.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2차)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보물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에 거열산성 진입 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거열산성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과 제4구역을 지남.
- ※ ‘14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5.15) : 보류
 -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거창군수
- (2) 대상문화재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96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가지리, 대동리, 대평리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130m
 - 사업내용 :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 폭 10~20m, 길이 4.5km

라.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의견

- 진입도로가 경남 유형문화재 제230호 ‘거창향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통과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에 따라 거창군수가 관계전문가 3인에게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거창향교로부터 240m 정도 이격되어 있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별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진동에 대한 문화재 영향 검토 후 사업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5.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4차)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보물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8.22) : 부결
 - 역사문화경관 훼손 우려.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9.26)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2.20)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96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4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7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구분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규모	최고높이 (m)	구조
1차('13.08)	99.84	99.84	지상1층	5.5	철근콘크리트/ 시멘트기와
2차('13.09)	86.10	86.10	지상1층	6.4	목조
3차('14.02)	106.46	106.46	지상1층	6.45	목조
금차	97.32	97.32	지상1층	6.45	목조

라. 지방자치단체(거창군) 의견

- 본 건은 국가지정문화재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구역(원지형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단독주택 신축 공사로, 지난 2013.08.22(1차), 2013.09.26(2차), 2014.02.27(3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불허하였고, 2014.03.17(동일내용) 신청 반려한 사항으로 건축주가 건축형태 및 건축면적을 변경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하였으므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6.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보물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에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5.15) : 부결
 - 건물규모가 커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6-2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61-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470m
 - 사업내용 :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
 - 기존 관리사무소 : 지상1층 건축면적 118.8㎡

- 계획(안)

구분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규모	최고높이 (m)	구조
변경전	553.2	893.51	지상3층	15.6	철근콘크리트조
변경후	492.6	774.71	지상2층	10.8	철근콘크리트조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차폐수목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식재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17.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3차)

가. 제안사항

경남 합천군 소재 보물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에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1.16)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3.20) : 부결
 - 현조조사 의견에 따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합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69-1, 365-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88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30m
 - 사업내용 :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
 - 제방공사 : 4개소

- 공원조성 : 1개소
- 보 개량 : 1개소(기존 보파손 개량)
- 징검다리 : 1개소

라. 지방자치단체(합천군) 의견

- 당해 문화재의 조망권 확보 및 공원부지 매장문화재 발굴결과에 따른 유적의 성격반영, 탐방여건과 석축에 대한 보완정비 등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해 보완 조치하여 다시 신청하였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8.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주변 주민쉼터 조성

가. 제안사항

경남 양산시 소재 보물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주변에 주민쉼터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민쉼터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718-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652-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20m
 - 사업내용 : 주민쉼터 조성
 - 화장실 1개소 :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108.65㎡, 연면적 168.65㎡, 높이 9.3m
 - 주차장 18대 : 450㎡
 - 기타 펜스, 월두막, 파고라 등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9.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화장실 이전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괴산군 소재 보물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화장실을 이전 신축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화장실을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각연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각연길 451
 - 지정일 : 1966. 02.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각연길 45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임.
 - 사업내용 : 화장실 이전 신축
 - 규모 : 정면2칸, 측면1칸, 28.86㎡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공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20.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나무데크 포토존 설치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에 나무데크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나무데크 포토존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동군수
- (2) 대상문화재 :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
 - 지정일 : 2003. 03.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래리 산56-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220m
 - 사업내용 : 나무데크 포토존 설치(60㎡, 난간높이 1.42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8명, 보류 1명

21.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태양광발전설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반야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
 - 지정일 : 2003. 03.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80m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시설 설치
 - 10kw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로 9m, 세로 5m, 높이 4.5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22.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 태양광발전설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국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75m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시설 설치
 - 10kw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로 9m, 세로 5m, 높이 4.5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23. 강릉향교 대성전 주변 향교관리사 개축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주변에 관리사를 재건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관리사를 재건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강릉향교 대성전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교동 233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강릉시 교동 23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37m
 - 사업내용 : 관리사 재건축(기존화장실 철거 포함)
 - 기존관리사 규모 : 93.78m²
 - 신축관리사 : 지하1층(철근콘크리트조)/지상1층(한식목조), 건축면적 129.6m², 지하면적 263.25m², 높이 6.885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규모와 형태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24.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하동군 소재 국보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지리산 국립공원사무소장(국립공원관리공단)
- (2) 대상문화재 :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 소재지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97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180m
 - 사업내용 : 보호구역내 기존화장실 철거, 공중화장실 이격 신축
 - 건축면적 : 46.06㎡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
 - 층수 : 지상 1층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신청건물의 평면과 입면 형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8명, 원안가결 1명

25. 부안 개암사 대응전 주변 공원관리사무소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보물 「부안 개암사 대응전」 주변에 공원관리사무소(분소)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원관리사무소(분소)를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환경부장관(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장)
- (2) 대상문화재 : 부안 개암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32-2
 -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역
 - 사업내용 : 공원관리사무소(분소) 신축
 - 건축면적 : 205.58㎡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 지상1층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26.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산신각 및 요사채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보물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에 산신각 및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산신각 및 요사채를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보현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117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117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63m
 - 사업내용 : 산신각 및 요사채 건립
 - 면적 : 30.38㎡(두 동이 동일)
 - 규모 : 정면3칸, 측면3칸, 목구조

라. 지방자치단체(강릉시) 의견

- 삼성각에는 본래 산신·독성·칠성을 봉안하여야 하나, 현재 고려말 추앙

받던 지공·나용·무학대사로 추정되는 삼성승을 모셔 전각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스님들의 수행공간 마련을 위한 요사채를 건립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27.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연수원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연수원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연수원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3:10 이상)인 경우 최고높이 12m(2층) 이하 - 사역확인을 위한 유구조사 및 역사문화경관 고려 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41-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480m
 - 사업내용 : 연수원(본관동 1개동, 부속동 1개동)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688.91㎡(1,546.42㎡)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3층, 16.8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28.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산장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산장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산장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3:10 이상)인 경우 최고높이 12m(2층) 이하-사역확인을 위한 유구조사 및 역사문화경관 고려 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41-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450m
 - 사업내용 : 산장(숙박동 2개동, 부속동 1개동) 신축
 - 규모 :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534.48㎡, 연면적 886.52㎡
 - 높이 : 6.7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29. 여수 흥국사 홍교 주변 산림공원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 「여수 흥국사 홍교」 주변에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여수시장
- (2) 대상문화재 : 여수 흥국사 홍교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중흥동 산191-3
 - 지정일 : 1972. 03. 0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산191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7m(보호구역내 일부 포함)
 - 사업내용 : 산림공원 조성
 - 산책로 개설
 - 제방데크로드 : L = 70m
 - 목교설치 : L = 30m
 - 수변데크로드 : L = 420m

- 메타세콰이어 숲길 데크로드 : L = 210m
- 수목식재 : 느티나무, 팽나무 등 9종 식재
- 편의시설 설치 : 정자 1동, 등 의자 16개, 평상 2개, 휴게 데크 2개소

라. 지방자치단체(여수시) 의견

- 보물 흥국사 흥교 주변 70m 이상 구간(원지형 보존)에 대하여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데크 설치, 수목조성, 목교설치, 정자설치, 의자 설치)로 문화재에 큰 영향이 없을 듯함.

마. 현지조사의견(2014.06.12)

- 흥교와 흥국사 주변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고 기존 건물의 철거부지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신청계획에서 수목식재, 평상의 데크설치, 정자설치, 메타세콰이어 길조성은 경관저해가 크지 않으므로 신청서와 같이 시행하되,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목교설치, 제방 위 데크는 제외하고 수변 데크는 황토포장 등의 자연스런 재료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 수종은 전통조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30.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건축물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사적 제337호 나주 읍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6구역 “타 문화재 허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대호동 84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44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신축
 - 대지면적 : 822㎡
 - 건축면적(연면적) : 484.75㎡(969.5㎡)

- 건축구조 : 일반철골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 11m

라. 지방자치단체(나주시) 의견

- 이미 지난번에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건으로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재신청건으로 문화재 보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 기 현상변경 허가 사항(2012.01.20)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소매점 및 사무소)
 - 대지면적 : 822m²
 - 건축면적(연면적) : 323m²(323m²)
 - 건축구조 / 층수 및 높이 : 경량 철골조 / 1층, 4.60m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8명, 보류 1명

31.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가. 제안사항

광주 동구 소재 보물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 (2) 대상문화재 :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광주 동구 운림동 11
 - 지정일 : 1975. 08. 0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광주 동구 운림동 863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m
 - 사업내용 :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 기존도로 노면 표기 및 도막형 바닥재 포장 : 225m
 - 데크로드 설치 : 775m(2개 타입)
 - 우회탐방로(흙길) 및 쉼터 조성 : 3개소
 - 목교 설치 : 1개소(L=8m, B=2m)
 - 돌쌓기 및 수로관 설치 등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32.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광주 동구 소재 보물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화장실 신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 (2) 대상문화재 :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광주 동구 운림동 11
 - 지정일 : 1975. 08. 0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광주 동구 운림동 1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경내 화장실 신축
 - 기존화장실(44.52㎡), 기존 석축(H=2.8m, L=25.24m) 및 담장(H=1.5m, L=25.24m) 철거
 - 화장실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39.6㎡(79.2㎡)

- 건축구조 : 1층 철근콘크리트조, 2층 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 7.9m(배면4.6m)
- 석축, 담장, 정화조 설치
 - 석축 : H=2.99m, L=26.61m
 - 담장 : H=1.5m, L=26.61m
 - 정화조 100인용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33. 강진 백련사 사적비 주변 선·차문화체험센터 건립(3차)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보물 「강진 백련사 사적비」 주변에 선·차문화체험센터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선·차문화체험센터를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천기 제151호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지정구역 일부 포함됨)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3.20)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4.17) : 부결
 - 사역과 단차가 있어 문화재 경관 저해우려 및 동백나무 숲 훼손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진군수
- (2) 대상문화재 : 강진 백련사 사적비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7
 - 지정일 : 2004. 01. 2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7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선·차문화체험센터 건립

	1·2차('14.04.17)	금차	비고
안채	140.4m ²	140.4m ²	위치변경
아래채	118.25m ²	118.25m ²	위치 및 형태변경
주변정비	석축, 계단, 배수로, 담장 등	석축, 계단, 배수로, 담장 등	

- 안채
 - 건축면적(연면적) : 140.4m²(140.4m²)
 - 건축구조 : 목구조
 - 건축양식 : 팔작지붕, 겹처마, 굴도리 5량가
- 아래채
 - 건축면적(연면적) : 118.25m²(118.25m²)
 - 건축구조 : 목구조
 - 건축양식 : 팔작지붕, 홑처마, 굴도리 5량가
- 주변정비공사
 - 석축·계단·담장 설치, 기존 배수로 측구 정비 등

라. 참고자료

○ 현지조사의견(2014.04.01)

- 백련사 사역과는 약 4m 가량의 단차가 있어 신청위치에 신축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아래 사항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청건물의 전면으로 높은 석축이 발생하여 주변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채를 안채보다 낮게 배치하여 전면 석축의 높이를 축소함이 좋겠음.
- 신축부지가 동백나무 숲과 인접하여 숲의 훼손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동쪽으로(상단의 요사채 우측 끝을 넘지 않는 선) 이동하여 배치하고, 보행로 또한 동쪽으로 이동하여 개설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배치에 대해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34.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템플스테이 수련관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화순군 소재 국보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에 템플스테이 수련관 건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템플스테이 수련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쌍봉사주지
- (2) 대상문화재 :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195-1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74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0m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수련관 건립
 - 수련관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23.12㎡(123.12㎡)
 - 건축구조 : 목구조
 - 건축양식 : 맞배지붕, 겹처마, 무고주 5량가

- 협문이전 : 1동
- 석축형담장 설치 : H=2.1m, L=19.5m
- 주변정비 : 담장 및 석축철거, 기존가설 샤워실 철거

라. 지방자치단체(화순군) 의견

- 한국선종불교 문화의 산실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템플스테이 운영을 통하여 수련관을 신축하여 전통 불교문화의 체험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35.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숙박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안양시 소재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1구역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이하” 및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1인
- (2) 대상문화재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4-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79m
 - 사업내용 : 숙박시설(호텔) 신축
 - 대지면적 : 1,233.4㎡
 - 건축면적(연면적) : 986.24㎡(4,377.55㎡)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최고높이 : 지하1층, 지상9층 / 29m(2-1구역:7.3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36.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등 탁본

가. 심의사항

금석문 탁본 사업과 관련하여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등 4건의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 ※ 2014년도 금석문 탁본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불교중앙박물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 (2) 대상문화재 :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등 4건
- (3) 대상 선정 방법
 - 역사적 중요성을 갖춘 유물 가운데, 선본 탁본이 미흡하여 보존이 시급한 대상 중심 우선 선정
 - 주변 환경 영향 등에 따른 유물의 명문 훼손 방지 대상 선정
- (4) 탁본방법 : 한지와 먹을 이용한 습식 탁본
- (5) 활용내용 : 향후 전시 및 학술 연구자료로 활용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붙임1>

대상문화재 세부 현황

연번	지정목록	명칭	소유자(관리자)	소재지	연대
1	보물 제68호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慶州 皇南洞 孝子 孫時揚 旌閭碑)	국유(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240-3	1182
2	보물 제251호	칠곡 선봉사 대각 국사비 (漆谷 僊鳳寺 大覺 國師碑)	국유(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송산로 275-209(선봉사)	1132
3	보물 제252호	포항 보경사 원진 국사비 (浦項 寶鏡寺 圓眞 國師碑)	보경사(보경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보경사)	1224
4	보물 제316호	청도 운문사 원웅 국사비 (淸道 雲門寺 圓鷹 國師碑)	운문사(운문사)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운문사)	1144

<붙임2>

대상문화재 현 모습

보물 제68호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慶州 皇南洞 孝子 孫時揚 旌閭碑)'



전면



후면



세부모습



세부모습

보물 제251호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漆谷 僊鳳寺 大覺國師碑)’



전면



반측면



세부모습



세부모습

보물 제252호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浦項 寶鏡寺 圓眞國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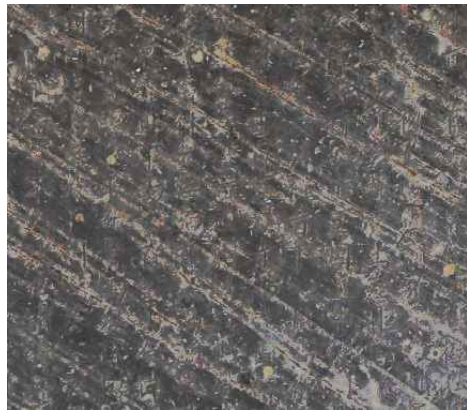
전면



반 측면



세부모습



세부모습

보물 제316호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비(淸道 雲門寺 圓鷹國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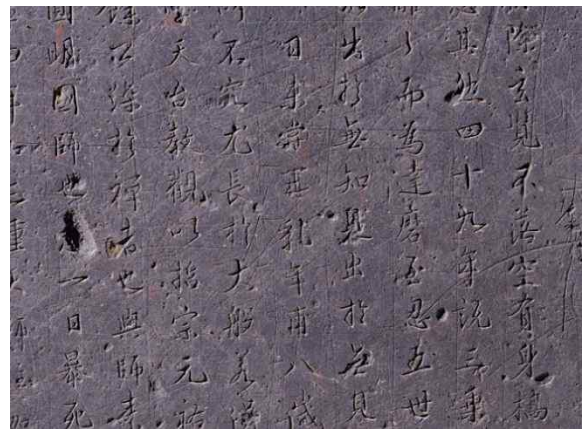
전면



후면



세부모습



세부모습

3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하고자 허용기준 조정(안)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4년 건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2014.05.15)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4.05.23.~'14.06.12)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1) 조정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조정 신청안
1	경남	국보	34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3 → 6구역
2	경북	보물	52	봉화 서동리 삼층석탑	도시지역 조정(200m이내)
3	광주	보물	109	(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경사지붕 추가
4	충남	보물	218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구역별 기준 조정
5	충남	보물	232	논산 관촉사 석등	구역별 기준 조정
6	경북	보물	521	영천 승렬당	도시지역 조정(200m이내)
7	경북	보물	616	영천향교 대성전	도시지역 조정(200m이내)
8	경남	보물	564	창녕 영산 만년교	평지붕 허용, 중첩 조정

※ 주요 조정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구역 불일치 현상 발생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지자체에 따라 10층 이상의 경우 500미터까지)
 - (현상변경허용기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임에도 외곽경계로부터 일괄적으로 500미터로 설정
- ⇒ 각 문화재별의 실질적인 규제 범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이 아니라 현상변경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 예) 문화재의 필요 규제범위가 200m일 경우, 200m 외곽범위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규제를 해소
- 단기간 다량의 허용기준이 마련되면서 문화재 주변 현황 및 특성,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규제된 지역 재검토
- 기타 주민 민원지역 재검토 등

(2) 향후 계획

- 건축분과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관보에 고시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8명, 부결 1명

첨부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대상별 회의록

[첨부]

01.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국보 제34호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37 (술정리)
- 지정일 : 1962. 12. 20.

나. 검토의견

- 신청부지는 술정리 동 삼층석탑 보호구역에서 약 170m 이격된 부지로 주변은 도시화가 이루어진 대로변이고, 석탑에서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으며, 2012년 3층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가된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안과 같이 완화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다. 허용기준 조정 신청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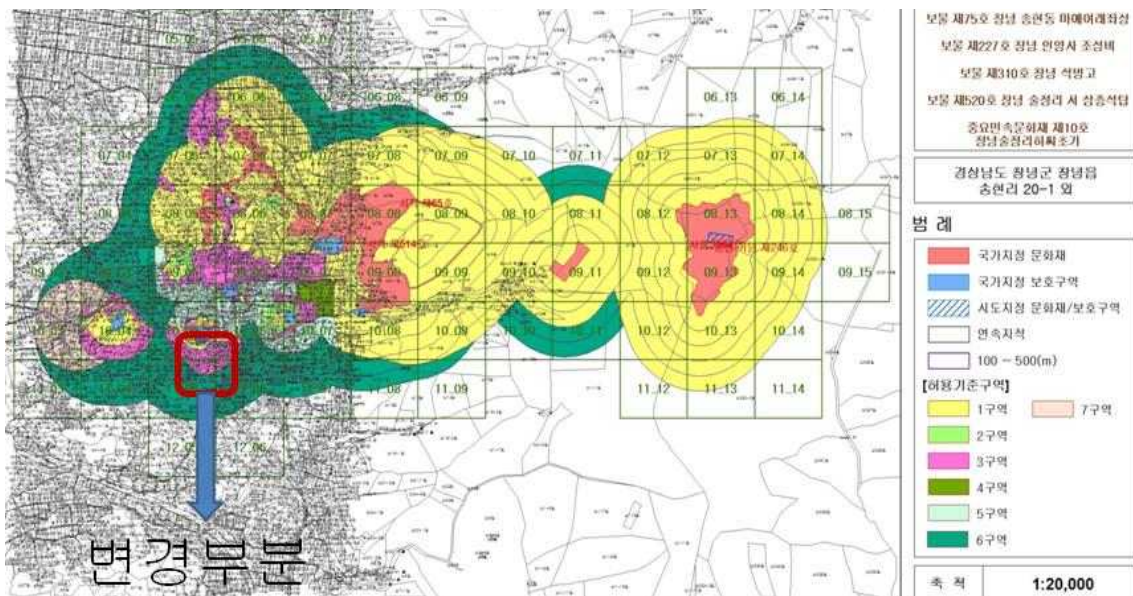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표기

라. 자문회의 결과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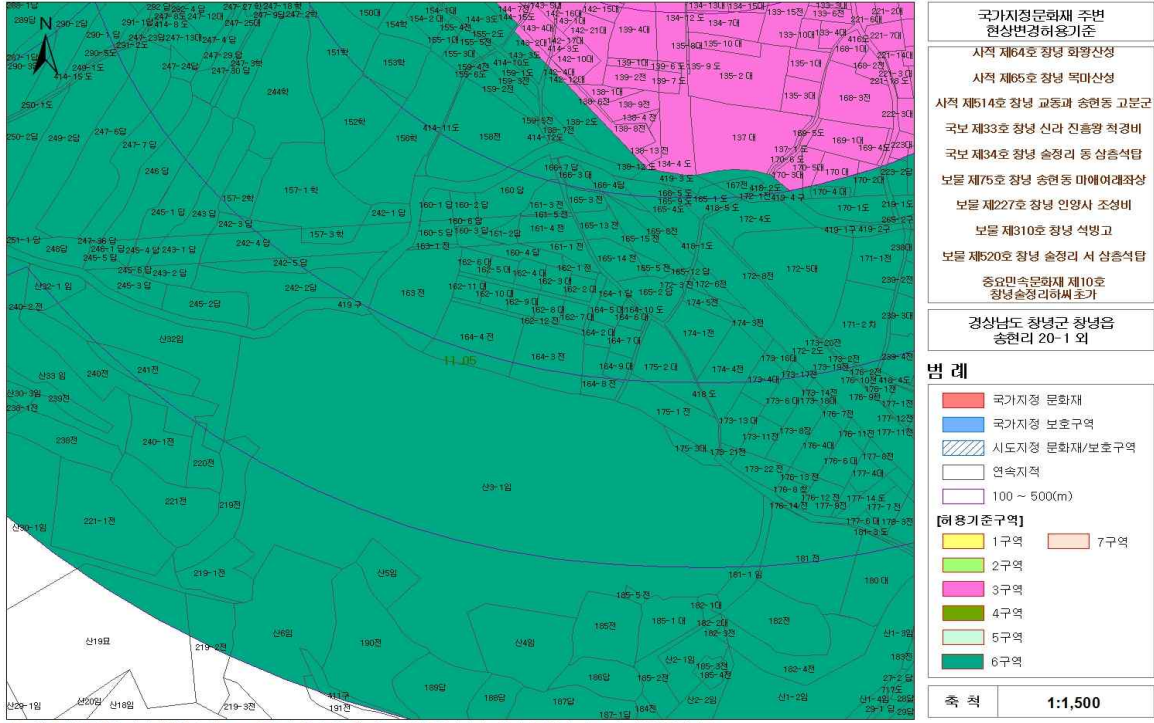
< 현상변경허용기준 - 변경없음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조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여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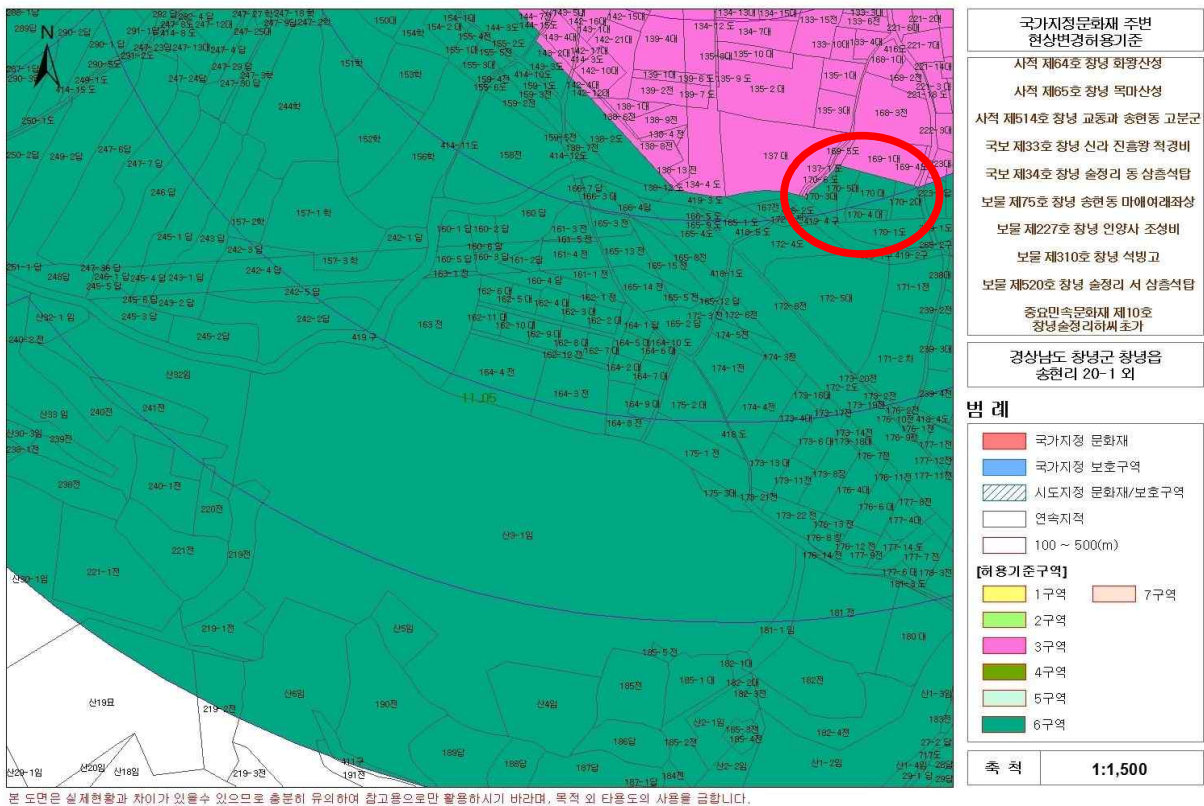
< 기 시행 지형도면 - 전체 >



< 기 시행 지형도면 >



< 변경신청 지형도면 >



02.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52호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9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나. 검토의견

-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구역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완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 허용기준 조정 신청 내용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기준 공통사항 조정, 지형도면 일부 조정 등

라. 자문회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450m외곽 이남부 일부까지 3구역으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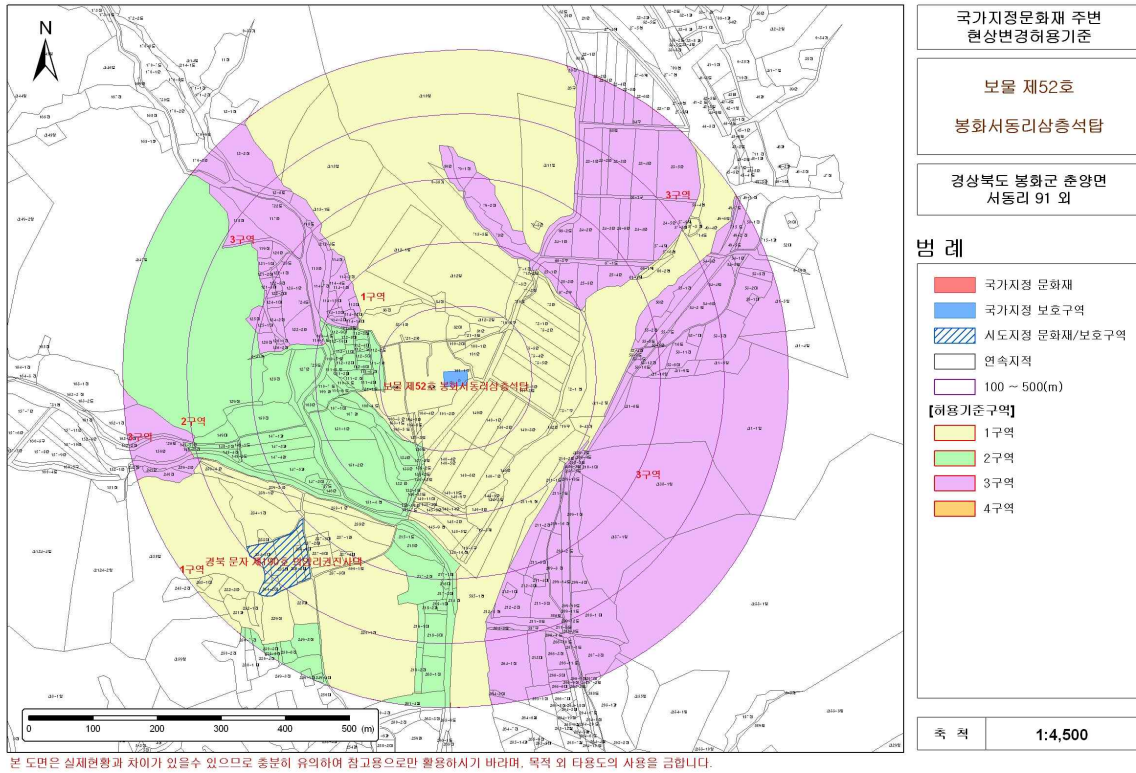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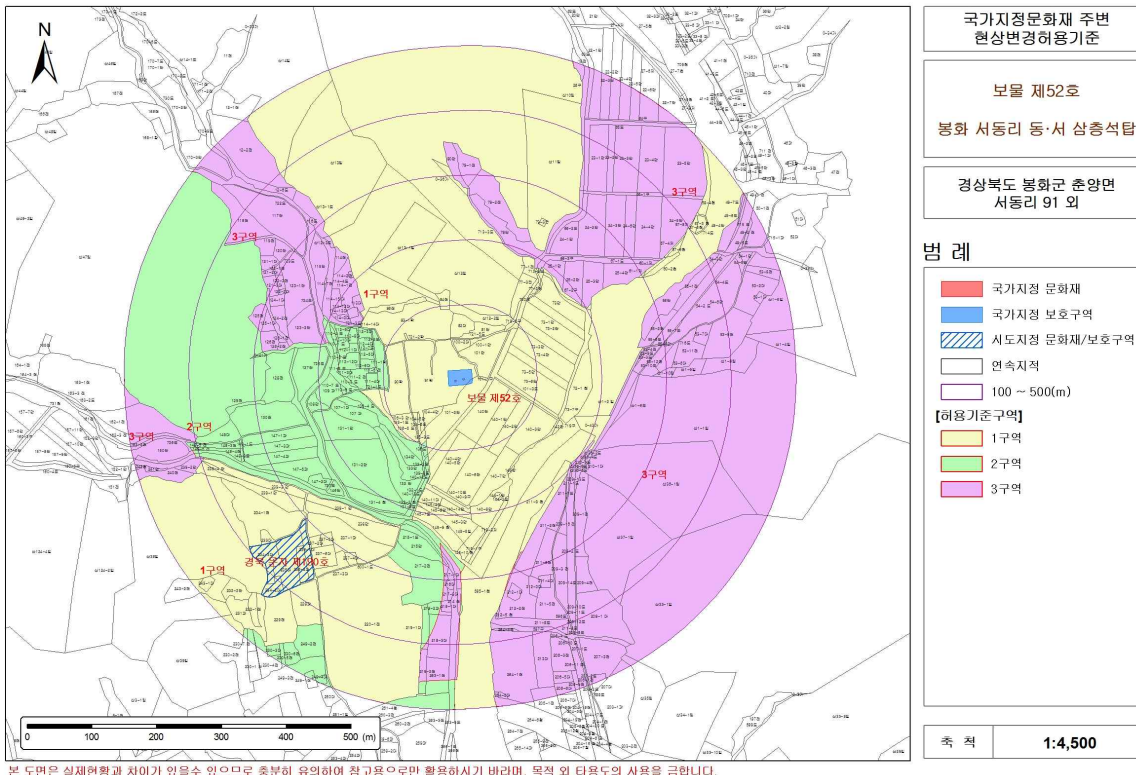
< 변경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p>○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p> <p>○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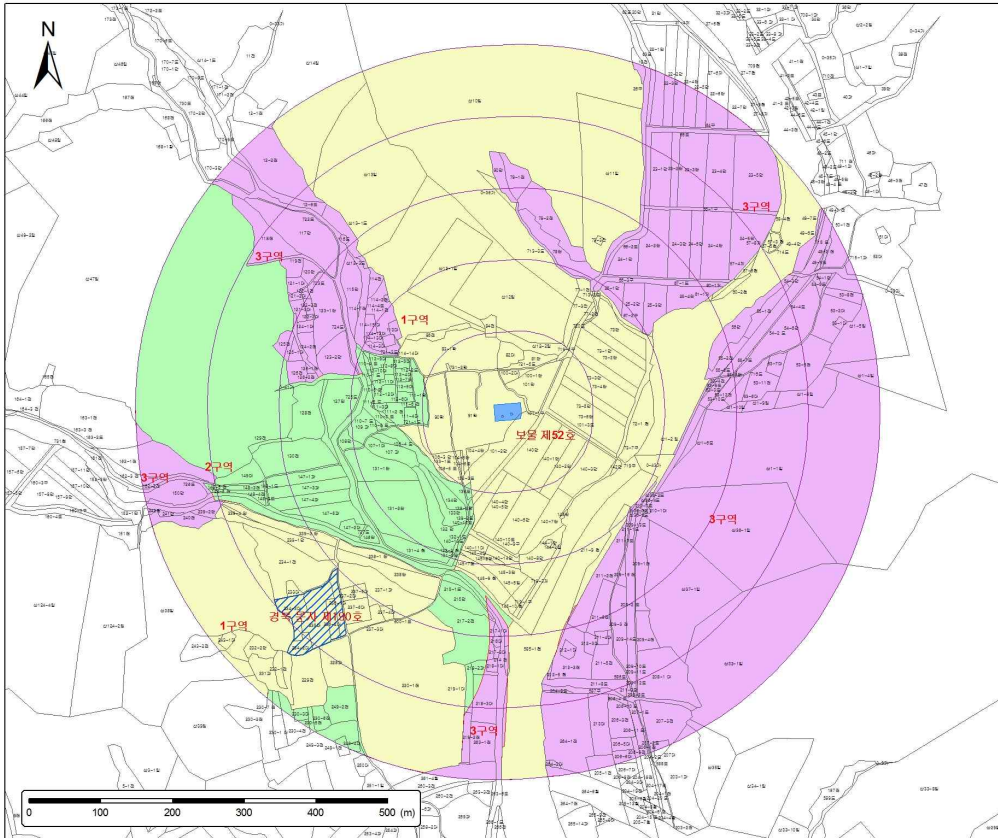
< 기 시행 지형도면 >



< 변경 신청 지형도면 >



< 자문의견 반영 지형도면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52호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91 외	
범례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연속지적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축척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03.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109호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구동 16-2
- 지정일 : 1963. 01. 21.

나. 검토의견

- 현재 오층석탑이 있는 공원 주변은 대부분 2~3층 이상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시가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임.
- 금번에는 허용기준 내의 같은 층수에서 경사지붕을 추가코자 신청한 사항으로 경사지붕을 할 경우 높이의 증가 요인은 있으나 탑과 주변 지형의 높이차가 크고 경사지붕은 경관 개선을 위한 권장사항에 해당되므로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다. 허용기준 조정 신청 내용

- 주요 변경사항 : 허용기준에 경사지붕 최고높이 추가

라. 자문회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경사지붕 높이, 2구역(11m), 3구역(19m), 4구역(23m), 5구역(43m)로 조정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6m(4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20m(5층)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40m(10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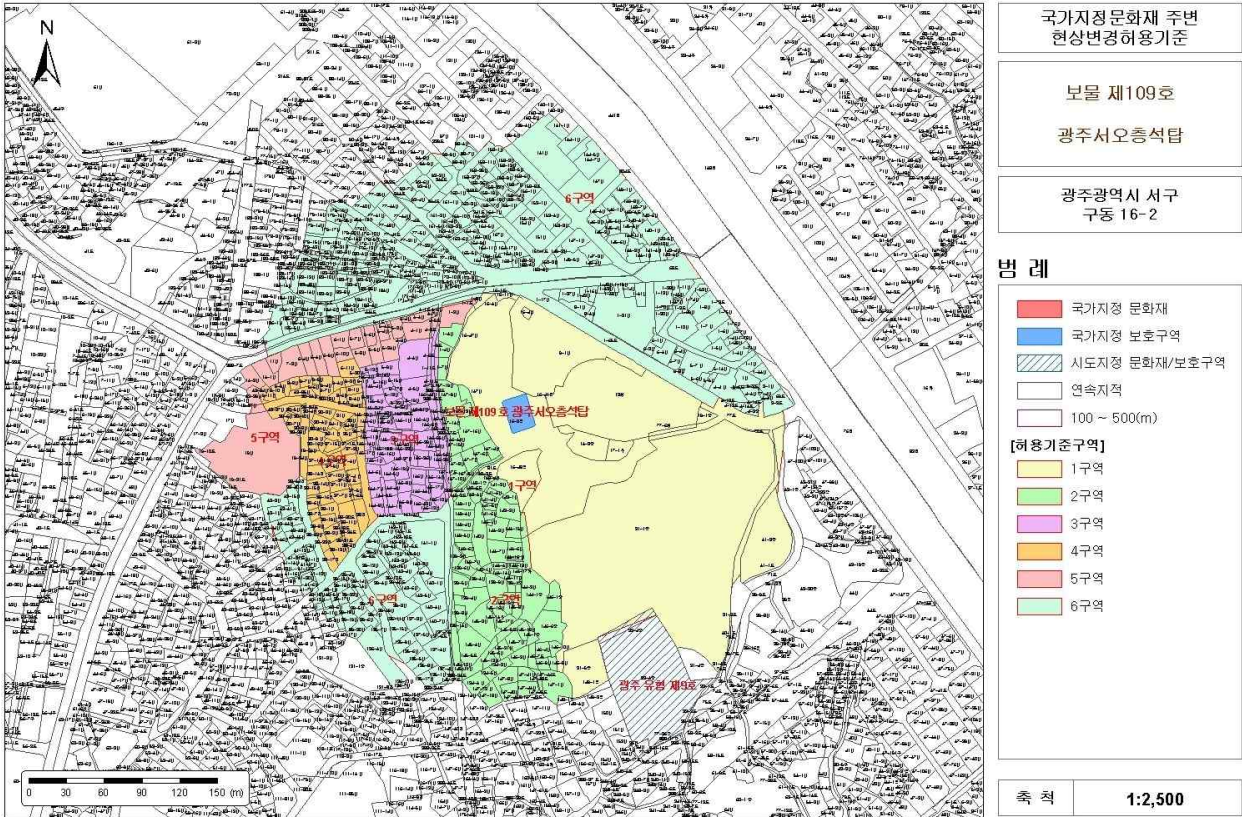
< 변경 신청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6m(4층) 이하	○ 최고높이 20m(4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20m(5층) 이하	○ 최고높이 24m(5층)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40m(10층) 이하	○ 최고높이 45m(10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삭제)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자문의견 반영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6m(4층) 이하	○ 최고높이 19m(4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20m(5층) 이하	○ 최고높이 23m(5층)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40m(10층) 이하	○ 최고높이 43m(10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삭제)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지형도면 - 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04.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218호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나. 검토의견

- 북쪽의 2구역으로 제한된 마을 지역은 주변 현황과 기존의 허가 사항을 고려하여 기존대로 유지하되, 도지정문화재 비로자나석불입상이 있는 주변 지역은 매장문화재 분포를 고려하여 시·발굴조사를 권고함이 좋겠음.
- 관촉사 전면 도로 건너편 전답지역은 1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의 건물 현황과 거리를 고려하여 2구역, 3구역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화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현 남동쪽은 3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찰의 측면에 해당되고 작은 능선과 수목에 가려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안과 같이 4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겠음.
- 사찰 배면의 산넘어 지역은 4구역 제한하고 있으나, 산 능선을 넘어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다. 허용기준 조정 신청 내용

- 주요 변경사항 : 허용기준 구역 변경, 지형도면 구역 변경

라. 자문회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관촉사 초입의 마을은 2층 규모로 허용, 3구역과 4구역을 최고높이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이하로 통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8m(4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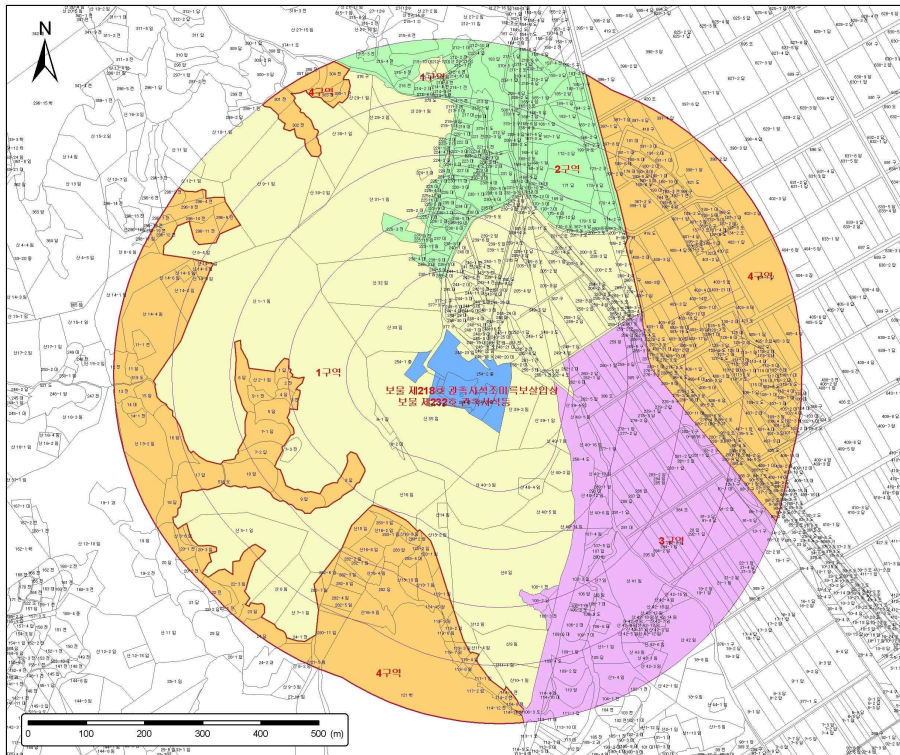
< 변경 신청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6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전체 구역에서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자문의견 반영 현상변경허용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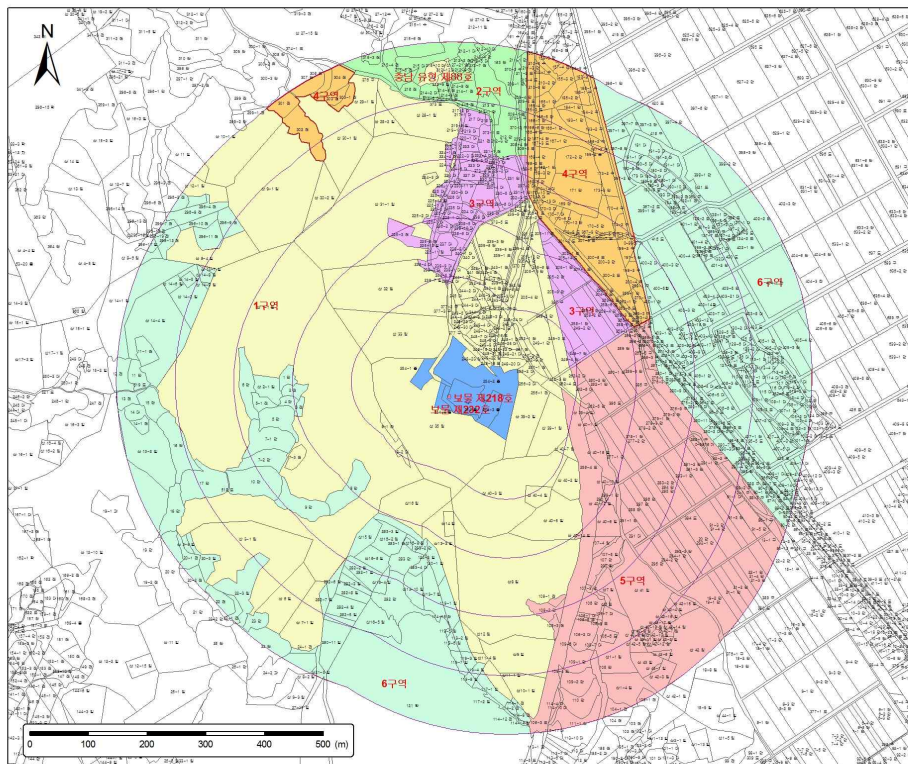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전체 구역에서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기 시행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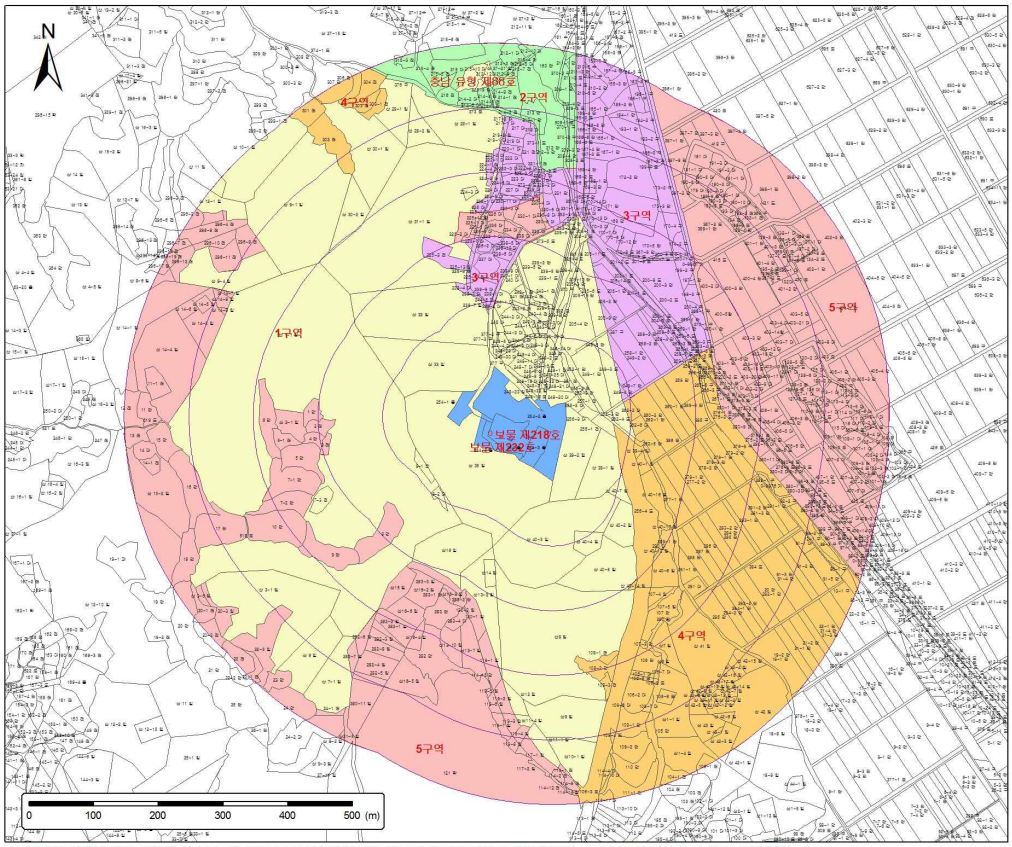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변경 신청 지형도면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자문의견 반영 지형도면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물 제232호
논산 관촉사 석등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관촉리 254

범 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 적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05. 논산 관촉사 석등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232호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나. 검토의견

- 북쪽의 2구역으로 제한된 마을 지역은 주변 현황과 기존의 허가 사항을 고려하여 기존대로 유지하되, 도지정문화재 비로자나석불입상이 있는 주변 지역은 매장문화재 분포를 고려하여 시·발굴조사를 권고함이 좋겠음.
- 관촉사 전면 도로 건너편 전답지역은 1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의 건물 현황과 거리를 고려하여 2구역, 3구역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화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현 남동쪽은 3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찰의 측면에 해당되고 작은 능선과 수목에 가려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안과 같이 4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겠음.
- 사찰 배면의 산넘어 지역은 4구역 제한하고 있으나, 산 능선을 넘어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다. 허용기준 조정 신청 내용

- 주요 변경사항 : 허용기준 구역 변경, 지형도면 구역 변경

라. 자문회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관촉사 초입의 마을은 2층 규모로 허용, 3구역과 4구역을 최고높이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이하로 통합

※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과 동일

06. 영천 송렬당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521호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성내동 9-2번지
- 지정일 : 1970. 07. 23.

나. 검토의견

-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구역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완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신청안은 반경 200m~500m에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제외토록 요청하였으나, 경상북도 조례에 의거 높이 10층 이상은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지역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현황과 동일함.

다. 허용기준 조정 신청 내용

- 주요 변경사항 : 도시지역(주거, 공업, 상업 지역) 200m초과 지역 공통사항 일부 제외

라. 자문회의 결과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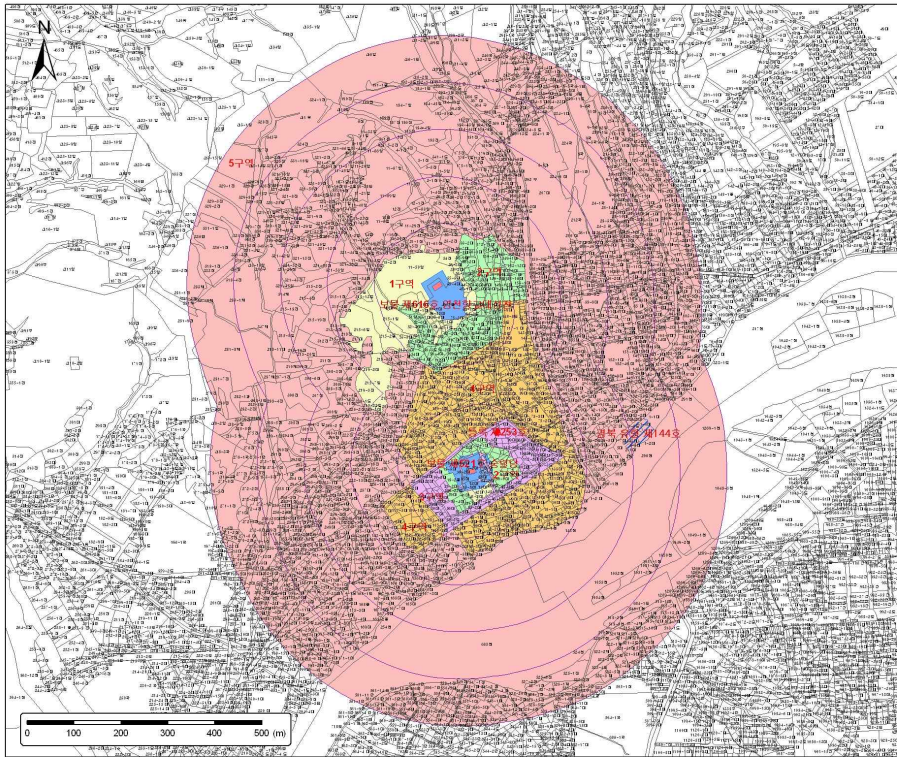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7m(4층)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변경 신청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7m(4층)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p>○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p> <p>○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기 시행 지형도면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521호 송월당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대성전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46-1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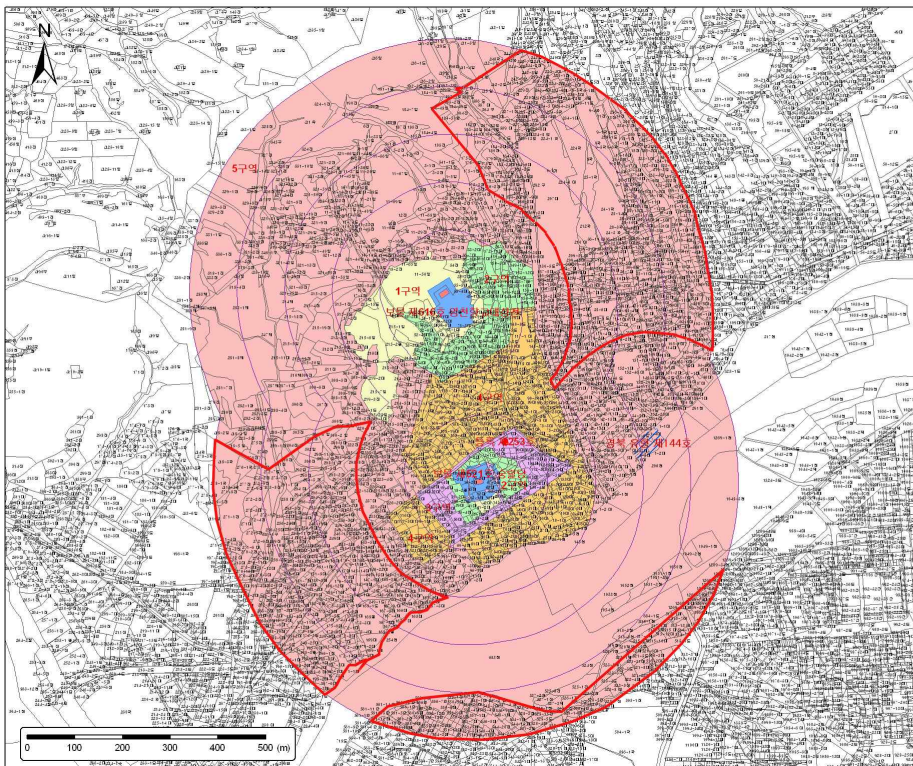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척 1:6,2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변경 신청 지형도면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521호 송월당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대성전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46-1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척 1:6,2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07. 영천향교 대성전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521호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성내동 9-2번지
- 지정일 : 1970. 07. 23.

나. 검토의견

-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구역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완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 허용기준 조정 신청 내용

- 주요 변경사항 : 도시지역(주거,공업,상업 지역) 200m초과 지역 공통사항 일부 제외

라. 자문회의 결과 : 원안가결

※ 「보물 제521호 영천 승렬당」 과 동일

08. 창녕 영산 만년교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564호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원다리길42 (동리)
- 지정일 : 1972. 03. 02.

나. 검토의견

- 당초 허용기준은 경사지붕 만을 허용하고 있어 평지붕을 허용토록 신청한 사항으로 만년교 주변이 도시화 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평지붕을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만년교와 인접한 지역은 경관보호를 위해 경사지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 허용기준 조정 신청 내용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조정, 지형도면 동일

라. 자문회의 결과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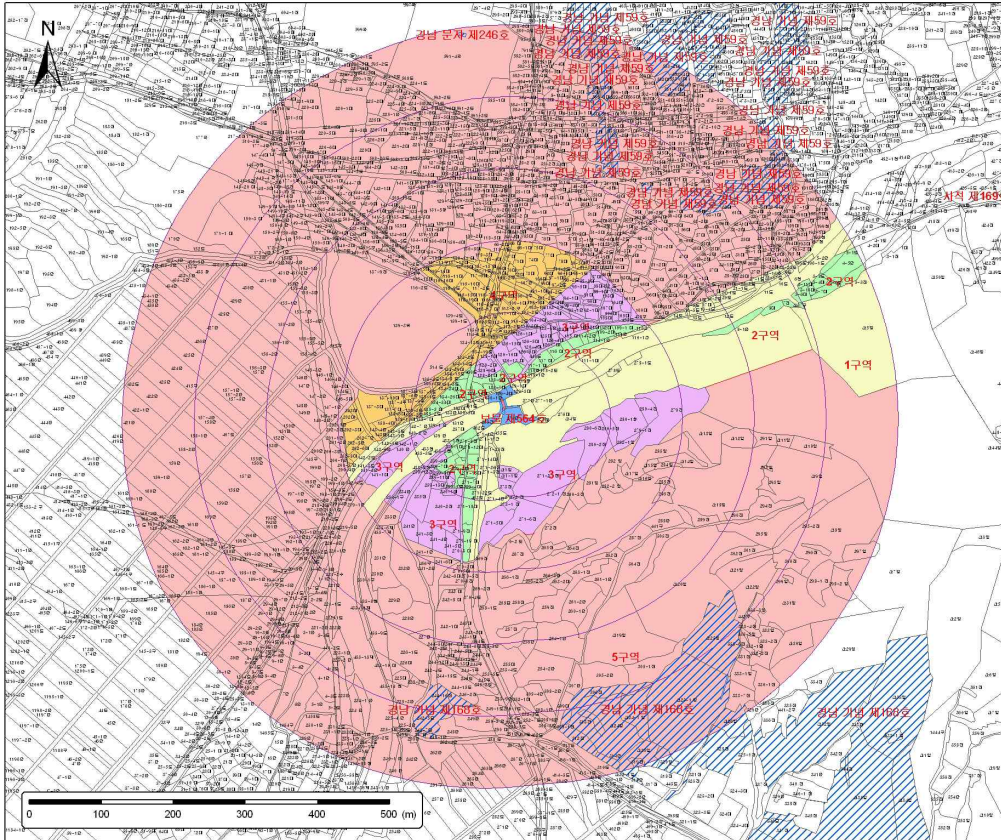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 최고높이 10m(2층) 이하	
제4구역	-	○ 최고높이 15m(4층)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변경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적용될 경우 그에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지형도면 - 변경없음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동리 455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이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척	1:4,500
-----------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4-06-038

38. 서울 승례문 종합복구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중구 소재 국보 「서울 승례문」 복구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라 단청, 지반, 기와 등에 대한 ‘승례문 종합 복구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08년 승례문 화재이후 추진한 ‘승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승례문 종합 복구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서울 승례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40

○ 지정일 : 1962. 12. 20.

(3) 검토내용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내용

- 단청공사

· 지적사항

▷ 전통단청 기술이 없던 단청장이 안료 흘러내림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자 합성수지 등을 몰래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단청의 박락·균열 심화

▷ 조선 전기 단청을 재현하려 했으나, 부실한 고증으로 15개의 주요 문양 중 12개에서 오류

- 조치 요구 내용

- ▷ 전통재료가 아닌 합성수지 접착제와 화학안료 등을 사용하고, 역사적 고증 없이 시공한 단청공사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시공

- 기와공사

- 지적사항

- ▷ 화재 전 송례문에 설치되어 있던 기와 규격대로 전통기와를 제작하다가 시공성 등을 이유로 공장제 KS기와 형태로 규격을 변경하여 시공, 송례문 지붕의 원형 훼손

(단위 : mm)

암기와		숫기와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490×370	420×360	440×220	360×180	

- 조치 요구 내용

- ▷ 현재 시공되어 있는 송례문의 기와를 고증을 거친 화재 전 규격으로 재시공하는 방안 강구

- 지반공사

- 지적사항

- ▷ 조선 중·후기 시점을 기준으로 송례문을 복원하기로 하고서 현대 토층을 그대로 존치(문루육축 : 9.7~29.9cm, 홍예 통로 평균 43cm)

- 조치 요구 내용

- ▷ 송례문 지반이 조선 중·후기 시점으로 원형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고증과 자문 등을 거쳐 재시공하는 방안 마련

- 목공사

- 지적사항

- ▷ 벌채시기·원산지 등이 상이한 목재로 동일 집단을 구성한 후 시료를 1~2개만 채취하거나 썩은 목재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시료의 대표성이 없게 함수율을 측정·관리

- 조치 요구 내용

▷ 함수울 측정 시 특성이 유사한 목재들로 로트를 구성하는 등 함수울 측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

○ 승례문 종합 복구 계획

- 단청 복구

- 단청안료(천연, 전통인공무기안료) 및 전통 교착제 품질평가 및 성능실험을 거쳐 전통기법으로 전면 재단청 실시

- 지반복구

- 승례문 육축 전·후면 지반은 육축 기초 유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반 높이를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홍예하부는 발굴조사 나타난 조선 중·후기 토층면 상단에 현재와 같이 자연석 박석(평균 두께 약 20cm)을 설치하되, 문지방석 등은 관람객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목재경사로 설치보완

- 기와복구 방안

- 기와교체시기 및 기와 규격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고증과 검토를 거쳐 보완 추진

라. ‘승례문 종합점검단’ 검토의견(’14.06.13)

○ 단청복구

- 현 박락된 승례문 단청 제거 후 전면 재단청을 추진하되, 천연단청안료, 전통 인공무기안료 및 천연교착제를 사용하여 복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 승례문 전통 단청 시공기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청복원공사 시 관련연구자가 참여하여, 연구실적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함.

○ 지반복구

- 승례문 육축 전·후면 및 홍예통로 내부 지반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변 지형 여건, 육축 하부 구조안전, 우수처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와복구

- 송례문 지붕기와는 조선후기 기와에 대한 충분한 고증이 필요하며,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의 검토를 받아 기와교체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함.

○ 목재보완

- 문화재 수리공사 시 목재 함유율 24% 이하 기준은 향후 충분한 연구·분석, 여타 관련 분야 함유율 기준 등을 참고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목부재 갈렘 부위 보존처리는 송례문 목구조가 안정화된 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목재 충전 등 보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39. 여수 진남관 보수공사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13년~‘14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여수시 소재 국보 「여수 진남관」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3년~‘14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여수시 소재 국보 「여수 진남관」 보수공사 계획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여수 진남관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군자동 472
 - 지정일 : 2001. 04. 17.
- (2) 사업내용
 - 사업명 : 여수 진남관 보수공사
 - 사업범위 : 전체적인 해체보수
 - 사업기간 : 2014년~2017년(4개년)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기간	공사별	공종별	비고
1년차	‘14.~‘15.9.	가설덧집공사	가설덧집·기계설비·소방공사 등	
2년차	‘15.10.~‘16.9.	해체보수공사	기와·목구조·기초 해체 등	
3년차	‘16.10.~‘17.9.	해체보수공사	치목조립·연목조립·지붕공사 등	
4년차	‘17.10.~‘18.9.	주변정비공사	단청·석축담장·조경공사 등	

소계				
기타	'14.~'18	설계, 감리		
합계				

라. 관계전문가 설계 자문의견

(1차 / 2013.09.24)

- 초석 및 변위진행 부재의 보강 필요
- 고층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최고의 전문가를 통한 보수 사업 진행
- 하부주차장 활용방안 검토 및 계단석 교체 고려
- 기존 부재 최대한 재활용 및 교체부재 활용방안 검토
- 여수 향토사학자 고층 반영, 천연 단청 시공 및 적정크기의 가설덧집 설치
- 기와 하중 경감방안 고려 등

(2차 / 2014.04.23)

- 가설덧집내 안전시설(관람동선) 및 실내작업환경 고려
- 진남관 객사기능(정청 및 좌익헌) 및 기단 복원기준 설정
- 기존 단청문양 변형으로 단청전문가의 자문 필요
- 전통한식 수제기와 반영
- 소방, 방재설비는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와 자문 필요
- 매영성(梅營城) 의미를 살려서 충분한 매화식재 고려
- 배면 배수처리와 관련하여 기존석축 위치 조정 등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가설덧집은 적정한 규모로 건립될 수 있게 재검토
 - 목부재에 대한 변형이 없도록 가설덧집 실내환경에 대한 검토 필요
 - 피뢰침, 소음, 분진 등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 필요
 - 흰개미 퇴치에 대한 검토 필요

- 건물해체 시 반출자재, 재사용 부재에 대한 공간확보 검토
 - 공사시 고건축 등 관계전문가로 기술지도단을 구성·운영하고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기술지도단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받아 추진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40. 여수 흥국사 대응전 보수공사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14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 「여수 흥국사 대응전」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4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 「여수 흥국사 대응전」 보수공사 계획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여수 흥국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
 - 지정일 : 1963. 09. 02.
- (2) 사업내용
 - 사업명 : 여수 흥국사 대응전 보수공사
 - 사업범위 : 연목이상 해체보수
 - 사업기간 : 2014년~2015년(2개년)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기간	공사별	공종별	비고
1년차	‘14년	가설 및 해체공사	가설덧집·보존처리·해체공사 등	
2년차	‘15년	보수공사	치목조립·연목조립·지붕공사 등	
소계				
기타	‘14~‘15	설계, 감리		
합계				

라. 관계전문가 설계 자문의견(2014.05.21)

- 연목이상 해체보수공사로 지침이 잡혀있다면, 공사기간이 짧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설덧집 과다 설계로 생각됨에 따라 축소를 검토하여야 함.
- 추후, 지붕 및 연목개판을 해체 후 현장자문을 통하여 공사범위가 확대된다면 후에라도 대규모 가설덧집을 설치하여도 무방함.
- 해체 범위가 늘어날 경우 경내에 부재창고 및 현장사무실 증축하도록 함.
- 공사 진행 시 진동으로 인하여 포벽 등이 손상 우려가 있어, 보양 및 경화처리 등이 우선 하여야 하며, 포벽에 대한 모사용역도 시행하여야 함.
- 목재의 선택은 국내산 육송으로 하며 감리, 감독관, 흥국사의 검토 하에 이루어져야 함.
- 임시 대응전의 경우 사찰측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중요 문화재는 유물전시관에 보관하도록 함.
- 내부의 관음벽화는 보존이 필수적이므로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외벽 미장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여야 함.
- 대응전의 막새, 망와의 문양이 여러 가지로 확인된 바 문양에 대한 자문은 추가로 실시하고, 전통한옥기와의로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포벽 보존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불상이운, 후불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 사업시행
 - 공사시 고건축 등 관계전문가 등으로 기술지도단을 구성·운영하고, 주요 공정은 관계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41. 나주 불회사 대응전 보수공사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14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불회사 대응전」 보수공사 계획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4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불회사 대응전」 보수공사 계획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나주 불회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999
 - 지정일 : 2001. 04. 17.
- (2) 사업내용
 - 사업명 : 나주 불회사 대응전 보수공사
 - 사업범위 : 연목이상 해체보수
 - 사업기간 : 2015.01~2015.12.

라. 현지조사의견

- <2014.06.11>
 - 불회사 대응전은 현재 지붕의 부분적 누수와 공포부의 이완이 보이므로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공포부의 이완은 육안으로 확인되나 벽체 등의 수장재는 이완이 크지 않으므로 금번에는 누수가 확인되는 연목 이상을 해체토록 설계하고,

향후 보수공사에서 연목해체 후 공포의 상태를 확인하여 2002년도 정밀 실측자료, 금번 3D스캔 실측자료 등을 비교하여 변위의 진행 상태를 파악 후 연목 이하의 해체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 또한, 건물의 훼손 원인 중 기와의 무게 증가로 인한 장기하중의 증가가 부재 이완 및 훼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와, 보토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좋겠음.

○ 국립문화재연구소(2012.07.11~12)

- 조사내용
 - 건축물 목부재 훼손상태 및 안전성 여부 확인 검토
 - 목재저항측정기를 이용한 부재단면성능 조사
- 조사내용
 - 연목이상 해체수리 검토요함
 - 순각판은 신재교체 보수
 - 기둥 외부 단면결손부위와 내부 빈공간은 건전한 목재와 수지를 이용하여 보강
 - 평방머리 균열 부분은 격쇠로 보강
 -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건물전체의 변형양상 파악 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42.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안건부의 기준 조정 검토

가. 제안사항

효율적인 문화재위원회 회의 추진을 위하여 마련한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안건부의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기에 이를 검토 받고자 합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한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안건부의 기준에 대하여 운영 중에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 조정하였기에 이를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안건부의 기준 조정
 - 안건부의 기준 적용 현황
 - 건축문화재분과 안건을 위원회 안건과 자체처리 안건으로 구분 처리하며, 소위원회는 대규모 사업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 개별안건별로 구성 운영
 - 자체처리 안건부의 기준

구 분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원지형 보존	이외 구역
건축물	화장실 신축(33㎡ 이하)	1층(평지붕 4m, 경사지붕 8m 이하) 농가용 단독주택	12m미만의 건축행위 등
기타 사항	소규모 전기·통신주 설치 등 경미한 사항 [붙임] 참조		

- 위원회 안건부의 기준 : 자체처리기준 초과 또는 자체처리에서 부결된 안건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허가 자체처리 건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배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자체검토 회의 조정계획

□ 자체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5인(전문위원 2명, 유형문화재과장, 유형문화재과 사무관 2명)
 - 전문위원은 우리 청 상근전문위원(건축, 동산, 사적, 근대 문화재과) 중 2인 참여
- 회의운영 : 수시 개최

□ 자체검토회의 대상

구 분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원지형 보존	이외 구역
건축물	화장실 신축(1층 33㎡ 이하)(추가)	1층(평지붕 4m, 경사지붕 8m 이내) 농가용 단독주택(추가)	12m 미만의 건축행위
		- 기존면적의 20%미만의 기존건축물의 증축 및 허가사항 변경 -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동일지번내의 위치변경	
기타 사항	- 석축(높이 4m미만), 바닥, 배수로 정비 등(추가) - 1m이하의 성·절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 등 - 소규모 전기·통신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 소규모 운동기구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 산림가꾸기(수목벌채), 위험목 벌채 등 이와 유사사업 - 재해 등에 의한 긴급보수 사업으로 당해문화재가 아닌 것 - 확장이 없는 도로의 보수·포장 및 기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관로공사 등 - 비닐하우스 등 일정기간 사용하는 임시시설물 등 - 기허가 받은 동일 사항으로 허가기간 연장 및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동일 사항 재허가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4-06-043

43. 공주 마곡사 대응보전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마곡사 대응보전」의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당해문화재에 변형이 확인됨에 따라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공주 마곡사 대응보전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마곡사 (운암리)
 - 지정일 : 1984. 11. 30.
- (2) 보수 및 점검 실적
 - 1986~1987년 : 산자이상 해체보수(부식목재 교체 후 번와보수)
 - 1999년 : 산자이상 해체보수(부식목재 교체 후 번와보수)
 - 2008년 : 마루, 샷자리 보수, 방충방부제 도포 등
 - 2010년 : 지붕보수(부식목재 교체 후 번와보수)
 - 2011~2012년 :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부재 처짐, 이완 등 확인)
 - 2012년 12월 : 국립문화재연구소 구조안전조사 시행
 -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수리 범위 및 방향 결정

라.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 조사기간 : 2013. 7. ~ 12.

- 용역업체 : (주)누벨 비 에이엔씨
- 조사항목 : 하층 조사, 비파괴조사, 목재 수종감정 및 구조안전성 평가 등
- 진단 결과
 - 대부분 소나무류로 식별되나 사례 일부가 리기다소나무 혼용
 - 배면, 좌면 하층 기둥의 목재 함유율이 상시 20% 이상 유지됨에 따라 부후 진전 가능성 높음
 - 축조과정에서 다음의 구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① 전후면 도리와 좌우면 도리의 레벨차 ② 하층 추녀의 틀어진 방향성 ③ 상층 활주의 지지상태 및 부식 ④ 귀고주와 하층 추녀의 띠쇠 보강 등
 - 하층 전면열 어칸 좌측 기둥에서 최대 140mm 내측으로 쏠림 변위 확인
 - 상층 좌측-배면 귀고주는 기둥 하부 중심점에 비해 255mm의 편심(변형 인지 원부재의 형상인지 확실치 않음)
- 현지 자문회의 개최(2014.02.18)
 - 마곡사 대응보전은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되어 있으므로 향후 계측을 통한 변화양상을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체 여부를 결정함이 좋겠음.
 - 기둥 갈람 방향의 일관성을 토대로 전체 건물의 회전을 추정하여 주두 평방의 쪼개짐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마. 향후 계획

-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의하여 상시계측 시행.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상시계측 시행
 - 근원적 보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

44.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2차)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에 대하여 2012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에 대하여 2012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보고결과(2014.05.15) : 보류
- 현지조사 후 처리방안 검토.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로 308(무위사)
 - 지정일 : 1962. 12. 20.
- (2) 용역개요
 - 용역명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역기간 : 2012.08.23~2013.01.24
 - 안전진단 범위
 - 현황조사
 - 변위·변형 조사
 - 비파괴 조사
 - 비파괴 지반조사
 - 구조안전성 및 지반 안전성 검토
 - 보존관리방안 수립

(3) 용역 결과

- 주요 부재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수준이지만 일부 기둥의 부후와 대들보의 성능저하 및 전단력 근접, 제공과 소침차의 파손으로 연목의 휨거동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변위 계측 및 유지관리 필요
- 기둥(중·장기적 보수 필요)
 - 좌측면 기둥 2개소는 현재 구조적인 안전성은 확보한 상태이지만 장기적인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해체 복원 시 신부재를 이용하여 교체해야 함
- 처마 및 지붕(단기, 중·장기적 보수 필요)
 - 단기적 보수방안
 - 중도리 상부 연목 빠짐과 이격 부위는 꺾쇠를 이용하여 연목을 중도리에 고정하는 보수 필요
 - 제공 균열 부위는 꺾쇠를 이용하여 연목을 중도리에 고정하는 보수 필요
 - 대들보 단부 균열 부위는 철띠를 이용하여 감싸주는 보수 필요
 - 중·장기적 보수방안
 - 지붕 해체 복원시 정면, 배면 소침자와 제공 파손부재의 교체와 철판 보강이 필요
 - 지붕 해체 복원시 중도리와 산자 상부에 덧도리(누리개) 설치 필요
 - 지붕의 적재 하중검토를 통해 구간에 보토를 따라 적심으로 치환하여 하중 경감이 필요

라. 현지조사의견(2014.05.08)

-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단기적, 중·장기적 보수 방안을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향후 복원 및 근원적 보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이 필요함.

마. 현지조사의견(2014.06.03)

- 지붕가구와 연목의 변위는 확인되나 기둥 등의 변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다만, 전반적인 원인확인을 위해 기둥 등의 침하, 변위 데이터와

2001년 이전 보수 내용 확인 후 위원회에서 검토함이 좋겠음.

- 극락전 내부의 연등 설치를 위한 철구조물은 하중의 증가요인이 되므로 제거함이 좋겠고, 주변의 바닥 배수처리도 조정이 필요하며, 변위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 또한 연 4회 정도로 증가함이 좋겠음.

바. 향후 계획

- 현지조사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모니터링 시행

사.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추가 모니터링 시행
 - 근원적 보수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

4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광주 동구 소재 「광주 지산동 당간지주」 주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 9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비고
소 계		9건	변경허가 3건 허가 5건 조건부허가 1건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광주 동구 (동명개발주 식회사)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 (허가사항 변경1차) - 대지면적 : 1,125.9㎡→1,071.03㎡(감54.87㎡) - 건축면적 : 673.235㎡→637.613㎡(감35.622㎡) - 연면적 : 3,344.87㎡→3,176.70㎡(감168.17㎡) - 그 외 높이, 층수, 용도, 동수, 구조 변경 없음	변경허가	'14.06.08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경남 하동 (쌍계사주지)	○ 전통불교문화예술관 신축(허가 기간 연장) - 당초 : '12.4.13. ~ '13.6.30. - 연장 : '12.4.13. ~ '15.12.31.	변경허가	'14.06.0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비고
서울 문묘 및 성균관	서울 중구 (○○○)	<input type="checkbox"/> 당초 허가 사항 ○명륜당 사용(교육장) - 청소년 인성개발을 위한 인성 예절교육 <input type="checkbox"/> 변경 허가 신청 내용 ○당초 허가 사항 ○명륜당 사용(교육장) - 유교경전 교육(매주토요일)	변경허가	'14.06.18
홍천 회망리 당간지주	강원 홍천 (홍천군수)	○노상주차장 설치 및 도로보수 - 아스콘 덧씌우기 : 238.7m - 주차공간 : 26면	허가	'14.06.03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충남 천안 (○○○)	○ 근생시설 신축 및 진입로 개설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393-4(1구역-원지형, 보 호구역~약498m) - 진입로개설 : 65㎡ - 건축면적 : 198㎡ - 연면적 : 198㎡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 층수/높이 : 지상 1층/ 5.9m	허가	'14.06.17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충남 천안 (○○○)	○ 건물 진입로 개설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삼 태리 393-10 (1구역-원지형, 보 호구역~480m)	허가	'14.06.17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경북 칠곡 (○○○)	○ 옹벽 설치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822 (공통사향-3m이상 옹벽) - 부지조성에 따른 블록식보강토 옹벽 설치 : H 0.7~4.5m	허가	'14.06.1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비고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제주 제주 (불탑사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석깔기, 계단·석축 설치 - 위치 : 제주시 삼양일동 696 (1구역-원지형보존) - 박석깔기 : L 6.8m W 2.4m - 계단설치(2개소) : W2.4m H 1.6m, 1.95m - 석축설치 : L 11.06m H 1.6m 	허가	'14.06.18
강화 정수사 법당	인천 강화 (정수사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 전기화재예측시스템 구축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CCTV교체 및 설치 등) 	조건부허가 (굴착시 관계전문가 입회)	'14.06.08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